

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287-10

2008

AFRICA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NTS



국세청

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287-10

2008

AFRICA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머 리 말

국세청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현지국가의 조세제도와 행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책자」를 매년 발간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는 그 동안 세정간담회 등에서 우리 해외진출기업이 제기한 내용을 반영하여 「세정애로사항별 대처방안」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여 현지 세무 정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10개 국가에 대한 세무안내책자를 새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세무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8년 10월

국제조세관리관 강 성 태



목 차

I. 국가개황	1
〔나이지리아〕	
1. 일반현황	3
2. 정치현황	4
3. 경제현황	7
〔남아프리카공화국〕	
1. 일반현황	11
2. 정치현황	12
3. 경제현황	15
II. 투자여건	19
〔나이지리아〕	
1. 투자환경	21
2. 주요 투자유치정책	22
3. 투자 장·단점	23
4.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24
5. 투자진출 현황	25
6. 외환제도	33
〔남아프리카공화국〕	
1. 투자환경	36
2. 남아공 투자유치 동향	38
3. 각 주정부별 투자환경(9개주)	40
4. 외환제도	45

Ⅲ. 투자유치제도	47
[나이지리아]	
1. 개요	49
2. 세액감면 인센티브 제도	50
3. 진출형태별 투자절차	52
4. 지사 및 현지 법인 설립	53
5. 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대 투자	59
[남아프리카공화국]	
1. 투자유치제도 개관	63
2. 투자유치 인센티브	64
3. 법인설립	70
4. 연락사무소 설립	73
Ⅳ. 조세제도	75
[나이지리아]	
1. 나이지리아 국세청	77
2. 개황	78
3. 법인세	80
4. 소득세	84
5. 부가세	87
6. 원천세	89
7. 석유소득세	91
8. 기타세목	92
[남아프리카공화국]	
1. 남아공 국세청	94
2. 조세제도 개황	94
3. 법인세	97
4. 개인소득세	102



5. 자본이익세	107
6. 기타조세	108
V. 노무관리	111
[나이지리아]	
1. 임 금	113
2. 노동조건	113
3. 사회보장제도	114
[남아프리카공화국]	
1. 노동조건	115
1. 임금수준	117
VI. 주요기관	119
VII. 참고사항	131
1. 투자관련 참고	133
2. 남아공과의 FTA 관련자료	136
3. 대한전선 진출사례	138
VIII. 조세조약	141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I. 국가개황

[나이지리아]

1. 일반현황
2. 정치현황
3. 경제현황

[남아프리카공화국]

1. 일반현황
2. 정치현황
3. 경제현황

I. 국가개황

[나이지리아]

1. 일반현황

- 위치 : 아프리카 중서부, 서쪽은 베냉, 동쪽은 카메룬, 남쪽은 대서양의 기네만에 접해 있음
- 면적 : 923,768km² (한반도의 약 4.2배)
- 인구 : 1억4천만명 (2006년)
- 종족 : Hausa-Fulani(30%), Yoruba(20%), Ibo(17%)
- 언어 : 영어(공용어) 및 각 부족어 ※ 문맹률 : 41.3%(2007년추정)
- 종교 : 이슬람교(50%), 기독교(40%), 기타 원시종교(10%)
- 화폐 : 나이라(Naira,N) (U\$1 = N127.37 , 2007. 7월 기준)
- 수도 : 아부자(Abuja, 1991.12월 Lagos에서 이전)
- 주요도시 : 라고스(16백만명), 아부자(3백만), Ibadan, kano, kaduna 등
- 기후
 - 북부 : 덥고 건조하며 4-9월까지 우기
 - 남부 : 덥고 습하며 3-11월까지 우기. 살인적인 습기로 알려짐
- 시차 : GMT + 1 (한국보다 8시간 늦음)
- 회계연도: 1. 1 - 12. 31
- GDP : U\$1,166억(2006년)
- 1인당 GDP : U\$ 390(2006년)
- 인플레이율: 10.5% (2006년 추정치)
- 행정구역 : 36개 주와 1개의 수도 특별지역 (Abuja)
- 근무시간
 - 관공서 : 07:30-15:30 (월-금)
 - * 주에 따라 토요일 08:00-13:00까지 근무하는 곳도 있다.

4 ● 아프리카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기업 : 08:00-12:30, 14:00-16:30 (월-금)
 - * 기업에 따라 토요일 08:00-12:00까지 근무하는 곳도 있다.
- 은행 : 08:00-15:00 (월), 08:00-13:00 (화-금)
 - * 일부 은행의 경우 화-금요일 16:00나 17:00까지 근무하는 곳이 있으며, 일부은행에 한해 토요일 10:00-15:00까지 근무하는 곳이 있다.
- 상점 : 08:00-12:00, 14:30-18:00 (월-금), 08:00-13:00 (토)

2. 정치현황

- 정치체제 : 연방공화제(대통령 중심제)
- 정치약사
 - 7~14C 여러 Housa 왕국 번성
 - 14-15C Yoruba 제국 강국으로 발전, 동부에 Ibo족 거주
 - 1914. 1 영국 총독 전권 장악
 - 1922 신헌법 제정, 입법회의 창설
 - 1747 식민지 주요 3개지역 (북부의 Hausa 및 Fulanis, 동부의 Ibo, 서부의 Yoruba족) 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방 정부 설립
 - 1960. 10. 나이지리아 독립
 - 1963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선포
 - 1967-70 동부 Ibo족의 독립을 위한 Birra 내란
 - 1970년대~1980년대 초
석유가격 폭락이 있기 전까지 석유 붐을 타고 아프리카 부국의 하나로 부상
 - 1985. 8
25년 동안의 정치혼란을 접고 Ibrahim Babngida 장군이 무혈 쿠데타로 정권 장악

- 1993
 - 5월 대통령 선거에서 남부 Yoruba족 수상 Abiola가 폭넓은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선거 부정을 이유로 Babangida 장군이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함
 - 11월 국방장관 Sani Abacha 장군이 정당 및 의회를 해산하고 과도 정부를 해체, 모든 권력을 PRC(임시통치위원회)에 귀속시키면서 본 위원회 의장직을 맡음
- 1995 Abacha 장군, 1998. 10. 1일까지 군부 정치 유지를 선포
- 1998
 - 6월 군부 독재자 Sani Abacha 장군의 사망 이후 뒤를 이은 Olusegun Obasanjo 장군이 최초로 선거 일정을 발표, 12월 5일 지방 선거 개최
- 1999
 - 2월 27일 민정이양을 위한 대통령 선거에서 올루세군 오바산조 (Olusegun Obasanjo)가 당선, 5월 29일 취임
- 2000
 - 10월, Yoruba족 과격파와 북부 Hausa족간 민족 충돌
 - 적도 기네와 나이지리아, 해양 경계선에 관한 9월 조약 조인
- 2001. 4 나이지리아의 육군, 해군 및 공군의 수장 전원 은퇴
- 2003. 4 Olusegun Obasanjo 재선
- 2004. 6
 - Obasanjo 대통령, 코트디부아르 사태 해결을 위한 서부아프리카 5개국 정상회담 주최
- 2004. 8
 - AU 평화유지군의 일부로서 수단에 군병력 파병(현재 205명)
- 2005. 6
 - 빈곤퇴치문제 논의 위해 폴 볼포위쯔(Paul Wolfowitz) 세계 은행총장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르완다, 남아공 등 4개국 방문.
- 2007. 4 대통령 선거(우마루 무사 야라두아 Yar Adua 당선)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외교관계 연혁

- 1960.12 나이지리아 독립 정식 승인
- 1969. 2 라고스에 한국무역관(KOTRA 지점) 설립
- 1980. 2 양국 공식 수교
- 1980. 3 주나이지리아 한국 공관 설치
- 1981. 11 노태우 대통령 특사 나이지리아 방문
- 1982. 2 노신영 외무부 장관 나이지리아 방문
- 1982. 8 전두환 대통령 나이지리아 공식 방문 및 양국 정상회담,
경제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 1985. 7 항공, 문화협정 (가서명)
- 1988.10 이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
- 1989. 8 해운협정 (서명)
- 1994. 8 문화 및 교육 협정 (가서명)
- 1998. 3 투자보장협정 (서명)
- 2000. 7 오바산조 나이지리아 대통령 한국 방문
- 2002. 6 한일 월드컵 참관 정부사절단 방한
상무부 E.I. Ogbile 대외무역국장 KOICA 특별연수 참가
- 2003. 9 김칠두 산자부 장관 나이지리아 방문
- 2005. 2 이소운 과기부 장관 방한
- 2005. 3 아데니지 외교부 장관 방한
- 2005. 3 산자부 원자력산업 담당 일행 나이지리아 방문
- 2005. 5 다우코루 대통령 석유/에너지 특보 방한
- 2005. 7 한국석유공사 등 유력?전력분야 사장단 일행 나이지리아
방문
- 2005. 9 이중과세방지협정(가서명)
- 2005.11 응나마니 상원의장 방한, 아리유 교통부 국무장관 방한
- 2006. 3 노무현 대통령 아프리카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순방

○ 대한정책

- 1999년 5월민선정부 출범과 2000년 7월 오바산조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우리와의 상호보완적 협력관계 증진을 우선시하고 있어, 우리의 對나이지리아 투자확대 등 실질적 협력관계 증진에 큰 기대를 하고 있음. 나이지리아는 자국의 경제발전, 인프라 건설을 위해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 전수 및 한국기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나이지리아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력에 큰 관심을 표명, 우리의 對나이지리아 투자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임.
- 기본적으로 남북한 관계 발전 및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등 우리의 대북정책을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UN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도 우리 입장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음. 단,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와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G-4(일본·독일·인도·브라질)案에 찬성하고 있음.

3. 경제현황

□ 경제지표

- 무역수지 : \$314억 흑자(2006년 추정치)
 - 수 출 : 약 \$588억 (주요 수출품 : 원유, 천연가스, 코코아, 고무)
 - 수 입 : 약 \$274억 (주요 수입품 : 기계류, 공산품, 화학제품)
- 외 채 : \$65억(2006년), 외환보유고 : \$422억(2006년)
- 주요자원
 - 1일 석유생산량 : 236만배럴, 천연가스매장량 : 3조 4,750억㎥

□ 對 나이지리아 교역현황

(천U\$)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1~2월)
수출	598,671	680,171	831,070	809,476	98,848
수입	108,438	551,188	365,528	625,688	143,442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개 황

- 정치 불안, 부패 및 빈곤으로 오랫동안 힘든 보행을 해 왔던 나이지리아의 경제는 새롭게 시작된 문민 통치하에서 실질적인 경제 개혁을 이행중임.
- 나이지리아의 전 군부 통치자들은 GDP의 20%, 외화수익의 95% 및 예산 수익의 65% 가량을 차지하는 자본 집약적인 석유 부문에 대한 심한 의존에서 벗어나 경제 다변화를 이루는 데 실패함. 또한, 한때 식량 순수출국이기도 했던 나이지리아는 현재 농업 부문이 급속한 인구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해 식량을 수입해야 하는 실정이 됨. 2000년 8월 IMF 원조계약을 체결하면서 나이지리아는 경제 개혁을 조건으로 Paris Club으로부터 채무조정거래와 IMF로부터 U\$1백만의 차관을 받음.
- 그러나 나이지리아는 소비 및 환율목표액을 채우지 못해, 2002년 4월, IMF 계획에서 제외되었고, Paris Club으로부터 추가 채무면제도 받을 수 없게 됨. 이후 정부는 금융시스템 현대화와 과도한 임금 요구 금지를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 석유산업으로 얻은 수익 분배를 둘러싼 지역분쟁을 해결하는 등 IMF가 촉구하는 시장집약적인 개혁을 시행하겠다는 정치적인 의지를 보여주기 시작함.
- 2003년, 정부는 연료가격 규제를 철폐하기 시작하였고, 나이지리아 석유 정련소 4곳의 민영화를 발표, 회계 금융 관리를 위해 IMF의

빈곤퇴치 및 성장지원 금융(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을 모델로 한 국내 계획 운영 프로그램 국가경제권의 분배개발계획(National Economic Empowerment Development Strategy)을 창설함.

- 2005년 11월, IMF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 하에 나이지리아는 Paris Club의 부채탕감거래 승인을 얻어, U\$120억을 지불(총 거래 가치는 나이지리아 외채 총 U\$370억 중 U\$300억)하는 대가로 U\$180억의 부채를 탕감 받게 됨. 또, 2006년에는 나이지리아의 석유수출증가와 세계적인 원유가격 고가 현상으로 인해 나이지리아의 GDP는 엄청나게 증가하였음.
 - 주요 수출품 : 석유 및 석유 제품, 코코아, 고무
 - 주요 수입품 : 기계류, 화학제품, 운송장비, 공산품, 식품
 - 경제적 강점 : 에너지 자원 풍부
 - 경제적 약점 : 경제 운용능력 부족, 사회 간접자본 미비, 과도한 석유 의존 경제, 사회 불안
- 기간시설현황
- 전력(2004)
 - 생산량 : 190.6억 kWh/소비량 : 177.1억 kWh
 - 교 통
 - 도 로
 - . 주요 도시의 도로는 포장여부 잘 되어 있고 도로 편의시설도 많은 편이나 기타 지역은 열악한 상태.
 - . 총 길이 194,394km 중 포장도로가 60,068km (1,194km의 고속도로 포함), 비포장도로가 134,326km(1999년)
 - 철 도

- . 철도서비스는 라고스, 이바단, 카두나, 카노를 포함한 주요 도시들에서 이용 가능
- . 총 길이 3,505km 중 협궤도로 (궤간 1.067m)가 3,505km(2005년)
- 항공
 - . Nigerian Airport Authority(NAA) 가 운영하는 15개의 공항이 있는데 주요 공항은 Abuja, Kano, Lagos, Port Harcourt 등에 위치
 - . 나이지리아의 Lagos와 Kano에 있는 국제공항에는 주로 유럽의 KLM, British Airways, Lufthansa, Alitalia 등이 취항
 - . 총 69개 (2006년)의 공항 중, 포장 활주로 갖춘 공항 36개(914m 이하 2개, 914~1,523m 13개, 1,524~2,437m 2개, 3,047m 이상 6개)
- o 항만 항구 : Calabar, Lagos, Onne, Port Harcourt, Sapple, Warri
- o 수로 : 8,600km(Niger, Benue강, 작은 강 및 지류 길이)(2005)
- o 파이프라인 : 응축액 126km, 가스 2,812km, 액체석유가스 125km, 오일 4,278km, 정련품 3,517km(2006)

[남아프리카공화국]

1. 일반현황

- 위치 :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에 위치, 보츠와나,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짐바브웨와 접함.
- 면적 : 1,219,912 km² (한반도의 5.6배)
- 인구 : 약 4,740만명
- 종족 : 흑인 79%, 백인 9.6%, 기타 유색인종 8.9%, 인도/아시아계 2.5%
- 언어 : 공용어 11개 (영어, Afrikaans, Ndebele, Pedi, Sotho, Swazi, Tsonga, Tswana, Venda, Xhosa, Zulu)
- 종교 : 기독교 68%[백인의 대부분, 유색인종(흑인의 60%, 인도계의 40%)], 회교 2%, 힌두교 1.5%(인도계의 60%), 토착신앙과 정령숭배자 28.5%
- 화폐 : 랜드(Rand)(US\$1 = R6.7295 : 2007. 12.7)
- 수도 : 프레토리아(행정수도) 케이프타운(입법수도) 블룸폰테인(사법수도)
- 기후
 - 트란스발(Transvaal)지역 북부의 일부 열대성기후를 제외하고는 아열대성 기후를 보이며, 연평균기온은 17℃이다.
 - 동부지역은 고온다습하며, 그외 지방은 온대기후에 속한다.
 - 4-9월의 겨울은 건기로, 서울의 11-12월과 날씨가 비슷하나 낮에는 기온이 높은 편이고, 10-3월의 여름은 우기로 더운 편이지만 습도가 낮다.
 - 남아공의 평균 강우량은 약460mm로 세계 평균 864mm에 비하면 건조한 국가에 속한다.
- 회계연도: 4. 1 - 3. 31

- GDP : U\$2,551억 (2006년, 아프리카의 27%, 우리나라의 30%)
- 1인당 GDP : U\$5,318 (2006년)
- 행정구역 : 9개주(이스턴케이프, 프리스테이트, 하우텡 등)
- 근무시간
 - 관공서 : 08:00 - 16:00(토, 일요일 휴무)
 - 은행 : 09:00 - 15:30(일요일휴무)
09:00 - 13:00(수요일), 09:00 - 11:00(토요일)
 - 회사: 08:00 - 16:00(08:30 - 16:30)(토, 일요일 휴무)
(현장노동자는 금요일 오전 근무만 하는 경우도 있다)

2. 정치현황

- 정치체제 : 대통령중심의 공화제
- 정치약사
 - 1900년대 이전
 - 1652. 4. 네덜란드인 Jan Van Riebeeck의 케이프 테이블만 상륙
 - 1657 동인도회사의 네덜란드 자유농민 이주
 - 1688 프랑스 신교도들이 자국의 박해를 피해 이주
 - 1795 영국이 본토에 합병시킴
 - 1803 네덜란드의 점령
 - 1806 영국의 재점령
 - 1814 결국 영국에 양도됨
 - 1820 영국 측이 5,000여명의 영국계 이주민을 이주시킴
그 무렵 Shaka는 현재의 나탈 지역에서 다른 종족들을 정복하여 강력한 줄루국을 세우고 왕이 됨
 - 1840 나탈리아공화국을 세웠으나 영국은 이를 승인하지 않음

- 1842 나탈 항구(지금의 더반)에 원정군을 보내 영국군과 전투를 벌였으나 패함
 - 1848 영국, 오렌지강과 바알강 사이의 지역을 합병
 - 1852 샌드강회담으로 바알강 북부 트란스발 지역의 독립을 인정받음. 트란스발공화국 건국(후 남아공)
 - 1854 브롬폰테인 회담으로 오렌지강과 바알강 사이의 지역도 독립을 인정받음
 - 1860 새로 건설된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인도인 계약근로자들 이주
 - 1877 트란스발공화국 영국 본토화함
 - 1879 줄루족과 영국인 간의 전쟁 발발(Isandhlwana전투), 줄루족이 패하여 세력이 약화됨.
 - 1881. 2 트란스발 공화국 독립, 폴크루거 대통령 취임
 - 1899~1902 Anglo-Bore 전쟁, 영국의 승리
- 1990년 이전
- 1910. 5. 31 영국으로부터 독립, 4개의 식민지(나탈, 케이프, 트란스발, 오렌지자유주)가 남아공의 형태로 통일됨
 - 1910. 9 Louis Botha장군 초대 수상 취임
 - 1912 아프리카 민족회의(ANC) 결성
 - 1934 Df Malan, 강경보수파 민족주의자들 규합하여 국민당 창당
 - 1948 선거에서 국민당 승리, 인종차별관련 법규 제정
 - 1949 타인종간 결혼 법적으로 금지
 - 1959 범아프리카 국회 구성
 - 1961. 5. 영연방을 탈퇴, 남아공 정식으로 건립
 - 1964 ANC지도자인 넬슨 만델라를 체포, 종신형에 처함

- 1978. 9 포스터 수상 사임 및 P.W. Botha 수상 취임, 혁신주의 천명
 - 1980 영국식 의회주의 폐지
 - 1983. 11. 대통령, 3개 의회, 인종구분 없는 내각, 대통령위원회, 흑인정치가 수용 등의 헌법 가결됨
 - 1984 백인종, 유색인종, 인디언으로 구성된 3원제 입법부 구성
 - 1986 미국, EC, UN등의 대남아공 경제제재 조치 결의
 - 1989. 9 De Klerk 대통령 취임.
- 1990년 이후 ~ 현재
- 1990. 2 ANC, PAC 합법화. 만델라 석방
공식적인 인종차별정책 전면 폐지
 - 1994. 4. 자유총선 실시, 만델라 대통령에 당선됨
 - 1994. 5. 남아공 유엔에 복귀
 - 1994. 6. 영연방 재가입
 - 1995. 진실과 화해위원회설치(Truth&Reconciliation Commission)
 - 1996. 10. 제헌의회에서 인종차별 철폐 등 인권보장 조항이 핵심인 신헌법 제정
 - 1997. 12 ANC, 전당대회 개최, Mbeki 부통령을 의장으로 추대
 - 1999. 6. Thabo Mbeki, 대통령에 당선
 - 2000. 6 야당연합(Democratic Alliance) 결성
 - 2004. 4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여당 ANC의 압도적 지지로 Mbeki 대통령이 재당선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외교관계 연혁
- 1950 남아공,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전쟁 참전

- 1990. 5. 대한민국 국민의 남아공 입국 사전허가제 폐지
- 1990. 6. 남아공인의 상용, 관광, 인도적 방문 등 순수한 민간교류목적의 30일 미만 비자를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토록 조치
- 1992. 12.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1993. 2. 주한 남아공 초대대사 입국
- 1993. 3. 주 남아공 대사관 개설
- 1993. 3. 주 남아공 공관 설치
- 1995. 7. 만델라(Mandela) 대통령 방한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항공협정 체결
- 1998. 4. 음베키(Mbeki) 부통령 방한
- 2002. 4. 월드컵 기념 전통예술단 남아공 방문 공연
- 2002. 5. 2002 월드컵 홍보활동 전개
- 2004. 2. Sonjica 남아공 과기부 부장관 방한
- 2006. 5. 반기문 외무장관 음베키 대통령 예방
- 2006. 11. ‘한-남아공 경제협력위원회’ 창립회의 개최
- 2007. 1. 폼질레 응쿠카 음람보 부통령 방한

3. 경제현황

□ 對 남아프리카공화국 교역현황

(천U\$)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1~10월)
수출	530,185	959,433	1,319,522	1,794,231	1,480,112
수입	781,630	998,904	1,094,318	1,385,063	1,368,789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및 요하네스버그무역관

□ 개 황

- 주요 수출품 : 금, 비철금속, 광물류
- 주요 수입품 : 기계장비, 운수장비, 화학제품
- 경제적 강점 : 부존자원 풍부, 사회간접자본 및 공업기반 양호
- 경제적 약점 : 정정 불안
- 수출액 : U\$591.5억(f.o.b. 기준, 2006년 추정치)
- 수출품 : 금, 다이아몬드, 기타 금속과 광물, 기계류와 장비
- 수출국 : 일본 12.1%, 미국 11.8%, 영국 9%, 독일 7.6%, 네덜란드 5.3%, 중국 4% (2006년)
- 수입액 : U\$615.3억(f.o.b. 기준, 2006년 추정치)
- 수입품 : 기계류, 식품, 장비, 화학제품, 석유제품, 과학 장비
- 수입국 : 독일 12.6%, 중국 10%, 미국 7.6%, 일본 6.6%, 사우디아라비아 5.3%, 영국 5% (2006년)

□ 최근 경제 동향

- 2007년 10월, 남아공상공회의소(Sacob)는 9월의 비즈니스신뢰지수(BCI)가 8월(98.1)보다 다소 상승한 98.7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그러나 이 수치는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금융시장의 위기로 금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8월에 비하여 약간 개선될 것일 뿐, 7월(99.6)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치임.
- BCI 상승의 원인으로는 강세를 보인 주가와 귀금속 가격의 상승을 꼽을 수 있겠으나, 수출이 늘지 않는 점과 제조업이 침체되고 있는 점은 우려할 만 함. 경상수지 적자폭은 GDP의 7% 수준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2분기의 제조업 성장률은 최근 3년 동안의 최저치인 0.5% 성장에 그침.
- 전문가들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은 지난 2년간 무분별한 대출과 활발한 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인) 현상으로 분석하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BCI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07년 9월 중앙은행 발표에 따르면, 2분기의 경상수지 적자폭이 1분기(1,305억 랜드, 186억불)보다 다소 줄어든 1,252억 랜드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GDP 대비 비율도 6.9%에서 6.5%로 다소 축소됨.
 - 2007년 9월 남아공의 대표적인 석유화학기업인 Sasol이 지분의 10%를BEE 기업 등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함. 9월5일 주가 기준으로 약 179억랜드(25억불)에 달하여 BEE 거래 사상 최고의 금액으로 평가됨. Sasol 그룹은 최근 1년 반 동안 계열사 차원에서 BEE 거래를 계속해서 추진하여, Sasol Oil, Sasol Mining 및Sasol Gas도 성과를 거둔 바 있음.
 - 2006년에는 건설 분야가 14.3%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금융, 부동산 분야는 5.9%, 제조업은 4.7% 각각 성장함.
 - 2004년 4월말에 제 2기 Mr. Mbekie 정부의 출범과 함께 2010년 월드컵 주최국으로 확정된 바 있고, 치솟은 부동산 가격은 월드컵 개최와 더불어 지속될 전망이며,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건축 붐은 한국의 1970-80년대를 연상케 함.
- 기간시설현황
- 전 력
 - ESKOM이 남아공 총 전력의 97%를 공급하고 있음.
 - 남아공은 220v, 50Hz이며 각 산업공단에 대한 전력보급시설, 서비스는 매우 양호하지만, 흑인 집단지주지역에 대한 전기보급률은 매우 낮아 현재 보급률을 확대하고 있는 중임.

○ 통 신

- 전화는 400만대가 보급되어 보편화되어 있으나 TELKOM의 공급 능력이 부족하여 신청 후1-2개월 기다려야 하며, 비즈니스 거래 시는 팩스 송. 수신이 일반화되어 있음. 거의 모든 국가와 DDD통화가 가능하며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및 보츠와나와는 국가코드 없이 지역코드로 통화가능

○ 교 통

- 도로, 철도 및 항공 교통망이 주요 도시 사이에 잘 발달되어 있다.
- 철도의 총 연장: 20,872 km (2005년)
- 도로의 총 연장: 275,971 km (포장 57,568 km, 비포장 218,403 km) (2002년)
- 주요 항구로 Durban, Cape Town, Port Elizabeth, Richard's Bay, Saldanha, Mosselbaai, Walvis Bay 등이 있고 항구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적체현상이 거의 없음.
- 선박: 4척(1,000 GRT나 그 이상) 총 톤수: 31,505 GRT/37,091 DWT,
선박 종류: 컨테이너선 1척, 액화가스선 2척
외국 소유 선박: 덴마크 1, 해외 등록선박 : 8척(2006년)
- 파이프라인: 컨덴세이트(condensate)용 100 km; 가스용 1,052 km; 석유용 966 km; 정련제품용 1,354 km (2006년)



Ⅱ. 투자 여건

[나이지리아]

1. 투자 환경
2. 주요 투자유치정책
3. 투자 장·단점
4.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
5. 투자진출 현황
6. 외환제도

[남아프리카공화국]

1. 투자환경
2. 남아공 투자유치 동향
3. 각 주정부별 투자환경(9개주)
4. 외환제도

II. 투자 여건

[나이지리아]

1. 투자 환경

- 풍부한 자원, 대규모 잠재 시장
 - 1일생산량 250만 배럴, 세계 8위의 석유 생산국
 - 천연가스 및 광물자원 매장량 풍부
 - 인구 1억 4천만명의 거대 잠재시장
- 투자 자유화 및 활성화
 - 투자유치 업무를 총괄하는 NIPC(Nigerian Investment Promotion Commission)를 설립, One Stop Investment Center 운영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개선에 힘쓰고 있음
 - 나이지리아 정부는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현재 최대 외화 수입원인 원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연간 60억 달러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서중앙 아프리카 경제, 물류 허브
 - 풍부한 원유, 가스 및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서중앙 아프리카 경제 중심 국가로 부상하여 많은 국가들의 경제 진출이 늘어나고 있음
 - 나이지리아는 서중앙 아프리카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라고스 국제 공항을 통해 아프리카 전역에 항공기가 취항하고 있음
- 치안 부재 심각,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계획

2. 주요 투자유치정책

- 외국인의 투자범위가 확대되어 석유와 Negative List(무기, 마약, 화약, 군장비)를 제외한 모든 산업분야에 투자가 가능하며, 합작투자뿐만 아니라 100% 단독투자도 가능
- 은행, 보험, 광산업 투자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식매매도 가능하며, 자본 및 이윤의 해외송금도 보장함
- 나이지리아 투자진흥위원회(Nigerian Investment Promotion Commission, NIPC)를 통해 나이지리아 내 투자확대 방안을 전체적으로 기획, 조정하며 외국인투자 문제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 양자 및 다자적인 방법에 의한 신속한 해결을 추구하고 있음
-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자에게 각종 조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식품원자재, 기계류의 수입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산업파급 효과가 크고 국내 보존 자원을 개발·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입 대체 품목의 경우라 해도 단순히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생산하는 분야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 2004년부터 현지 생산이나 혹은 대체가 가능한 45개 소비재 완제품 품목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단행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 및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 정부의 투자정책 중점목표
 - 급속한 산업발전
 - 국내 부가가치 극대화를 통한 자립경제 체제 확립
 - 수출산업 육성
 - 고용효과 증대
 - 산업기술 습득

- 무역 증진
- 산업의 다양화를 통한 균형 있는 산업발전
- 나이지리아 투자 우선순위
 - 국산 원자재 사용비율이 최소 80% 이상인 농업 분야
 - 국산 원자재 사용비율이 최소 80% 이상인 석유화학 분야
 - 국산 원자재 사용비율이 최소 70% 이상인 농업관련 분야
(종이, 펄프, 섬유 등)
 - 국산 원자재 사용비율이 최소 70%이상인 화학공업 분야
 - 고용효과 증대산업
 - 수출산업

3. 투자 장 · 단점

- 투자의 장점
 -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대기업의 투자진출과 최근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외환보유고가 증가하고 정부 예산이 확대됨. 이에 나이지리아 정부는 석유잉여자본을 바탕으로 SOC 건설 등에 투자할 계획임
 - 자본, 기술 등을 투자하여 이윤을 대거 획득할 수 있는 취약산업이 많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 성공률도 높은 편이며, 임금, 수도, 전기 등이 비교적 저렴하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산업의 투자진출이 유망함
 - 석유·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이들 자원의 수출로 인한 외화수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인구 1억4천만명 이상의 대규모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서중양 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16개국 등 서부 아프리카 진출의 거점 지역으로 부상함

□ 투자의 단점

- 건설현장이 집중된 포트코트, 와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인 근로자 피랍 및 피습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치안 부재가 심각함
- 노동자들의 근면·성실성이 크게 부족하며 기술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계속·반복적인 지도감독과 교육이 필수적임
-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으로 외환시세는 안정되어 가고 있으나 고물가와 고금리로 및 은행금리의 인상으로 소비수요가 감소되어 불경기 가 계속되고 있으며 각종 인프라(통신, 수도, 전기, 도로 등)가 열악함
- 공무원의 부패, 국민의 낮은 교육수준 등으로 인해 근무 및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4.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 나이지리아는 한국에서 비행편으로 18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선박을 통한 각종 자재 및 제품의 수송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원 격지임
- 나이지리아 국내의 각종 인프라(전력, 통신, 교통, 교육, 치안 등 제반 분야)가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대 나이지리아 투자 시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 면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임
- 공무원 및 국민의 의식수준이 지나치게 낮고, 열대 기후로 인한 각종 질병(말라리아, 황열병과 같은 풍토병 등)이 만연해 있어 근무·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함
- 시장조사를 위한 각종 통계 등 정보가 많이 부족하므로 투자 준비단계에서 반드시 현지를 수차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해야 함

-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2010년까지 국산 원자재 사용 비율을 7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므로 나이지리아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외국기업들은 직접투자보다는 현지 에이전트 및 테크니컬 파트너를 지정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진출을 도모하는 것이 유리할 것임

5. 투자진출 현황

- 외국기업 투자동향
 - 원유확보를 위해 엑슨모빌, 쉘브론, 토탈 등 다국적 석유회사들이 진출하면서 미국 및 유럽의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했음
 -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되었지만 석유파동, 유가상승 등으로 경제개발의 어려움이 발생하자 중국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이 자원 확보 경쟁에 나서기 시작함
 - 특히 중국은 나이지리아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여 다수의 원유광구를 확보하고 철도 및 플랜트 건설 수주를 따냄으로써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음
 - 한국은 2006년 2개의 심해 유전광구(OPL321, OPL323)를 확보하고 카두나 지역에 정유공장을 건설하여 1,500km에 달하는 철도 및 발전소 건설 수주를 획득한 바 있음
- 우리기업 투자동향
 - 현재 나이지리아 투자진출 한국기업은 26개사 내외로 가발 및 플라스틱 제조 관련 업체 13개사, 대형 건설업체 3개사, 전기 및 전자 관련 업체 2개사, 기타 6개사 등이 활동하고 있음
 - 이들 한국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근로자수는 약 8천명으로 대형 건설회사 및 가발업체 현지 고용 인력이 주류를 형성

- 석유 관련 건설현장에 진출해 있는 건설업종을 제외한다면 한국의 현지진출 기업이 나이지리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수준
- 나이지리아 투자 초기에는 대우, 삼성 등 대기업이 건설업 및 도소매업 중심으로 진출하기 시작
- 1997년 이후 대 나이지리아 투자는 이동통신과 건설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2002년부터 다시 급격히 감소
- 2004년 제조업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으며 2006년 이후로는 원유 및 건설 플랜트 관련 투자가 급속히 증가
 - 한국석유공사 심해광구 2개 낙찰
 - POSCO, Port Harcourt-Abuja Maiduguri 1,500km 철도 건설
 -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대기업들은 13건 47억달러 수주 진행

〈주요국별 대 나이지리아 투자 동향〉

(단위: 십억 달러)

Host Region/Economy	2001	2002	2003	2004
World	818	681	580	612
Developed Countries	571	490	380	321
European Union	357	374	308	165
Belgium	-	15	29	7
France	50	49	47	35
Germany	21	36	13	-49
Ireland	10	24	27	26
Italy	15	15	16	15
Luxembourg	-	117	92	52
Spain	28	36	26	6

Host Region/Economy	2001	2002	2003	2004
United Kingdom	53	28	21	55
Australia	4	14	8	5
Canada	27	21	7	12
Japan	6	9	6	7
United States	159	63	30	121
Developing Countries	220	159	173	255
Africa	20	12	15	20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88	53	51	69
Brazil	22	17	10	16
Chile	4	2	3	6
Mexico	27	15	11	18
Asia and Pacific	112	94	107	166
China	47	53	54	62
Hong Kong	24	10	14	33
India	3	3	4	6
Korea	4	3	4	9
Singapore	15	6	11	21
Central and Eastern Europe	26	31	27	36
Czech Republic	6	8	3	5
Poland	6	4	4	5
Russian Federation	2	3	7	10

자료원: UNCTAD and UNCTAD' s own estimate (2007.2.28일 기준)

〈투자주체 및 업종별 대 나이지리아 해외투자 진출 현황〉

업종	현지법인명	신 고		투 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광업	KNOC NIGERIAN WEST OIL COMPANY LTD.	1	155,080	1	57,802
	KNOC NIGERIAN EAST OIL COMPANY LTD.	1	151,080	1	58,970
	DOLPHIN PROPERTY LIMITED	1	8,080	1	3,840
	합 계	3	314,240	3	120,612
통신업	WIRELESS SYSTEMS LIMITED	1	19,802	1	19,802
건설	POSCO ENGINEERING & CONSTRUCTION NIGERIA., LTD.	1	2,500	1	2,500
	DAEWOO DEVELOPMENT CO., LTD.	1	456	1	216
	DONGSAN TOKUN.	1	391	0	0
	HANYANG (NIGERIA) LTD.	1	360	1	326
	HYUNDAI INDUSTRIES,LTD	1	46	0	0
	HYUNDAI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 NIGERIA LTD	1	40	1	25
	합 계	6	3,793	4	3,067
제조업	WJ (NIGERIA) CORPORATION	1	1,000	1	181
	ONOSIEN HEECO ENGINEERING CO.,LTD.	1	450	1	255
	PRIMIER METAL IND.(NIGERIA)LTD.	1	306	1	271
	MARICHI INDUSTRIES LIMITED	1	200	0	0
	SANG SHIN METAL NIGERIA LIMITED.	1	160	1	160
	UNIT 2 INDUSTRIAL CO., LTD.	1	72	0	0
	합 계	6	2,188	4	867
도소매업	DAEWOO MOTOR SERVICES (NIG) LTD.	1	900	1	900
	DAEWOO NIGERIA LTD.	1	595	1	595
	DONGKYO KIUP	1	320	0	0
	SAMSUNG NIGERIA CO., LTD.	1	291	1	291
	KOREA INSU NIGERIA LTD.	1	60	1	8
	HYUNDAI COMPANY NIGERIA LIMITED.	1	12	1	12
	합 계	6	2,178	5	1,806
총 계		22	342,201	17	146,154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2007.5.10일 현재)

□ 한국기업 투자진출 현황

○ 현대중공업

프로젝트명	East Area NGL Project(가스 액화시설 공사)
발주처	CNL(Chevron Nigeria Ltd)

프로젝트명	Bonny Terminal Integrated Project
발주처	SPDC(Shell Petroleum Development Company of Nigeria Limited)
수주금액	7억4600만 달러
수주형태	발주처 원청, 공개경쟁입찰
계약일자	2002.3.4일
공사기간	2002.3~2008.4월
공사내용	기존 원유정제 시설 업그레이드 및 신설 (현 60만 배럴 정제 용량을 125만 배럴로 증설)
향후 추진일정	· 2002.3월 공사착공 · 2006.6월까지 기존시설 증설 완료 · 2008.4월까지 전 공정 완료

프로젝트명	Escravos Gas Phase 3 Project
발주처	CNL(Chevron Nigeria Ltd)

○ 대우조선

프로젝트명	Delta State Off Shore Plant Project (AGBAMI, FPSO)
발주처	CNL(Chevron & Texaco)/NNPC

○ 대우건설

프로젝트명	BRT(Bonny River Terminal) Expansion Project (원유탱크 확장공사)
발주처	MPN(Mobile Producing Nigeria)
공사내용	기존 터미널 확장을 위한 Site 보강 및 Pentane Storage Tank, Utilities 확장(65,000 BPD Fraction Train 및 300,000 BPD Storage Tank 확장공사)

프로젝트명	LNG Train 6 Project(LNG Plant 설치공사)
발주처	NLNG(Nigerai LNG Limited)
공사내용	LNG 플랜트 설치 및 부대공사(연 480만 톤 처리용량의 LNG Plant Process Area 내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장 공사)

프로젝트명	Agbami FPSO Module Project
발주처	Star Deep Water Petroleum Ltd. (Chevron 자회사)
공사내용	Agbami지역 신설 FPSO(부유식 원유저장 시추선)의 모듈 및 Flare Boom 제작공사

프로젝트명	Escravos Gas to Liquid Project
발주처	CNL(Chevron Nigeria Ltd)
공사기간	2006.2~2008.2월
공사내용	34,000 bpd Liquid Product 생산을 위한 Process Plant 설비공사

프로젝트명	EGGS(Eastern Gas Gathering System)2 Pipeline Project
발주처	PDC(Shell Petroleum Development Company of Nigeria Limited)

프로젝트명	Gbran/Ubie Integrated Oil & Gas PJ.
발주처	SPDC(Shell Petroleum Development Company of Nigeria Limited)
수주금액	8억8천만 달러
공사내용	1.4 Bil SCFD(Square Cubic Feet Per Day) 처리규모의 가스 Plant 및 12만 BPD 원유 생산 규모 Flow Station 부대시설 공사

프로젝트명	Afam VI Power Plant Project
발주처	SPDC(Shell Petroleum Development Company of Nigeria Limited)
수주금액	4억7500만 달러
수주형태	발주처 원청, 공개경쟁입찰
계약일자	2005.12.9일
공사기간	2005.12~2008.7월
공사내용	650MW 규모의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명	Downstream Project
발주처	나이지리아 대통령특별위원회
국내업체명	석유공사 한전 포스코 건설
수주예상금액	35억 달러
발주예정시기	타당성 조사 후
향후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SC 서명조건에 따라 서명 후 3개월 안에 Sterling Committee(3명)와 Working Committee(8명) 구성 • 타당성조사 후 SPC설립과 동시 양 Committee는 자동해산

프로젝트 명	18"x11km Oil Pipeline PJ
발주처	NAOC(Nigerian Agip Oil Company)
수주 예상금액	20(US \$백만)
향후 추진일정	2007년 상담기 계약 체결 예정

프로젝트 명	SAGG (Southern Swamp Associated Gas Gathering) PJS · Facilities Package · Pipe Line Package
발주처	SPDC(Shell Petroleum Development Company)
수주 예상금액	4~5억 달러
수주 추진 형태	원청 Consortium
수주 가능성	50%
발주 내용	Bayelsa 주Ogbotobo, Benisede, Opukushi 및 Tunu Field로 부터 약 120MMScf/d의 AG ,350MMScf/d의 NAG를 Evacuation 하는 인프라 공사
발주예정시기	기 발주
향후 추진일정	입찰서 제출, 기술사항 평가 중

프로젝트 명	Qua Iboe Terminal (QIT) Gas Flare Elimination PJ
발주처	MPNU (Mobil Producing NigeriaUnlimited)
수주 예상금액	1억 달러
수주 추진 형태	원청 단독
수주 가능성	50%
발주 내용	기존 QIT Terminal내 가스 Flaring을 제거 하기 위한 시설 공사
발주예정시기	기 발주
향후 추진일정	입찰서류 제출, 기술사항 평가 중

프로젝트 명	O.U.R (Obite~Ubeta~Rumuji) Gas Pipeline PJ
발주처	EPNL (Elf Petroleum Nigeria Ltd.)
수주 예상금액	1억5천만 달러
수주 추진 형태	원청 단독
수주 가능성	60%
발주 내용	42"x46Km 가스 파이프라인 공사 (Port Harcourt 북서쪽 75km 지점)
향후 추진일정	2007년 1/4분기 경쟁입찰 진행 중

프로젝트 명	Olo Kola(OK) LNG Plant PJ
발주처	OK LNG J/V (NNPC, BG, Shell, Chevron, etc)
수주 예상금액	5~10억 달러
수주 추진 형태	원청 Consortium 또는 하청
수주 가능성	60%
발주 내용	Ondo/Ogun State 경계 지역에 총 33M TPY 규모 LNG Plant 건설공사
향후 추진일정	2007년 EPC 낙찰사 선정 예상

6. 외환제도

- 규제완화가 추진중인 나이지리아 외환제도
 - 1995년 이후 외환거래 규제완화 추진
 - 1995년 외환관리법 제17조의 제정으로 외환거래에 대한 감독이 완화
 - 2005년 더치경매방식이 은행간 외환거래시장(Interbank Foreign Exchange Market)을 대체하여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의 주 외환거래방식으로 사용돼 나이라화 환율결정에 활용됨

○ 기업간 자금거래 자유화

- 모든 외화유입은 공인된 외환관리 은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나 비석유 상품 수출기업, 외국인투자자, 그 외 민간기업의 경우 은행이 아닌 공인 사설기업을 통해서도 이루어짐

○ 개인 외환거래 자유화

- 외국인의 나이러화 보유한도는 없으며 입국시 미화 5천불이상의 규모에 대해서만 통계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고할 것을 권장함

□ 자본금 및 자본이득의 해외송금

○ 외국자본의 나이지리아 유치 및 해외송금

- 외환관리법 제17조 15항은 외국인의 나이지리아 투자목적에 위한 외화자금의 유입과 이에 따른 자본유입확인서(CCI; Certificate of Capital Importation) 발급을 규정하고 있음
- 이 CCI는 향후 자본투자자로 인한 배당금 및 자본이득의 본국 송금시 증거자료로 활용됨
- 외환관리법 17조 13항은 외국인은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나이지리아 외환시장의 공인거래기관으로부터 외화를 매입할 수 있으며 자본의 해외송금을 원하는 자는 CCI를 비롯한 자본세 납입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자유롭게 송금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

○ 자본이득의 해외송금

- 외환관리법 제17조 15항은 투자에 따른 배당금 및 세후순이익의 공인거래기관을 통한 외국송금을 인정하고 있음

□ 외채의 유입과 상황

○ 해외차입 및 상환 자유화

- 외환관리법의 개정으로 해외차입과 그에 따른 이자, 원금 상환사항을 나이지리아 재무부에 신고해야할 의무요건이 없어짐
- 외화의 차입과 상환에 있어 CCI의 발급과 같은 기존의 외화자금 유입 및 해외송금의 절차를 따름
- 또한, 해외차입 조건에 대한 개별규정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절세효과는 개별차입조건에 준함. 최소 2년거치, 7년상환의 외화차입에 대한 이자상환시 외화송금에 대한 원천과세를 면하나 그 외의 경우 10%의 원천과세를 실시함

□ 기타 외국환 차입 및 송금에 관한 사항

○ 로열티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 로열티 및 사용료의 지불에 대한 사항은 배당금 및 이익금의 해외송금에 관한 사항에 준함
- 법개정으로 인해 매출액의 최고 5% 한도내에서 로열티 및 라이선스 사용료 지급이 가능하며 상담료에 대한 지불 또한 총비용의 5% 규모안에서 해외송금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둠

○ 무역관련 지불규정에 관한 사항

- 외환거래법 17조 19항은 유화제품을 포함한 상품의 수출거래자가 외화계좌를 개설해 수출에 따른 외화의 수입 및 지출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석유관련 기업 및 공기업은 중앙나이지리아 은행(CBN; Central Bank of Nigeria)을 통해 외국환거래를 해야하는 의무사항이 폐지돼 좀 더 자유로운 외환거래가 가능해짐

[남아프리카공화국]

1. 투자환경

□ 아프리카 경제대국, 안정적인 투자환경

- 남아공은 아프리카 전체 GDP의 약 27%를 점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최대 시장이며, 흑인계층 소득향상, 2010년 월드컵 개최 등으로 경기호조세 지속
 - 특히, 남아공 정부의 저금리 정책, 흑인계층 소득 증대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내수시장 규모 급증 → 아프리카 최대 상품시장
- 남아공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법적·제도적 장치도 잘 갖추어져 있어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투자환경이 안정적
 - UNCTAD는 최근 투자환경 보고서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 중 투자환경이 가장 좋은 국가로 남아공을 선정

□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

- 남아공은 금, 플래티넘, 망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에게는 유망 투자 대상국

[남아공 주요 광물자원 현황]

광 물 명	매장량	순위	생산량	순위
크롬(Chromeore)	5,500Mt	1	7,405Kt	1
금(Gold)	36,000t	1	373t	1
망간(Manganese)	4,400Mt	1	3,501Kt	1
바나듐(Vanadium)	12,000Kt	1	27Kt	1
플래티넘(Platinum-group metal)	70,000t	2	266,150Kg	1
우라늄(Uranium)	298Kt	4	758t	10

자료원 : Department of Minerals & Energy - South Africa's Mineral Industry

□ 남부 아프리카 시장진출 거점, 우회 수출기지

- 남아공은 높은 경제력 및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남부 아프리카의 물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남부 아프리카 시장진출의 거점국가
- 남아공은 유럽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EU, Efta 등 유럽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유럽 지역 우회 수출기지로 부상

□ 아프리카에서 가장 발달된 사회 인프라 보유

- 남아공은 아프리카 국가들 중 전력, 도로, 통신, 항만, 금융시스템 등 사회 인프라가 가장 발달된 국가
 - 남아공은 전체 아프리카 전력의 50%를 생산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의 항구, 도로 및 철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효율적인 물류이동 가능
 - 남아공 내 7개 항구는 연간 13,000대의 선박과 약 1.9억톤의 화물 처리 능력을 보유

□ 투자 제약요인

- 높은 자금 차입비용 및 환율 불안
 - 남아공은 환율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는데, 최근 IMF에 따르면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Targeting)¹⁾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 중 남아공의 2000~2005년 중 환율변동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아공 시중은행의 Prime Rate는 현재 12.5%로서 자금 차입비용이 상당히 높음.

1) 물가안정 목표제(Inflation Targeting)는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 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정책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이를 직접 달성하는 통화정책 운영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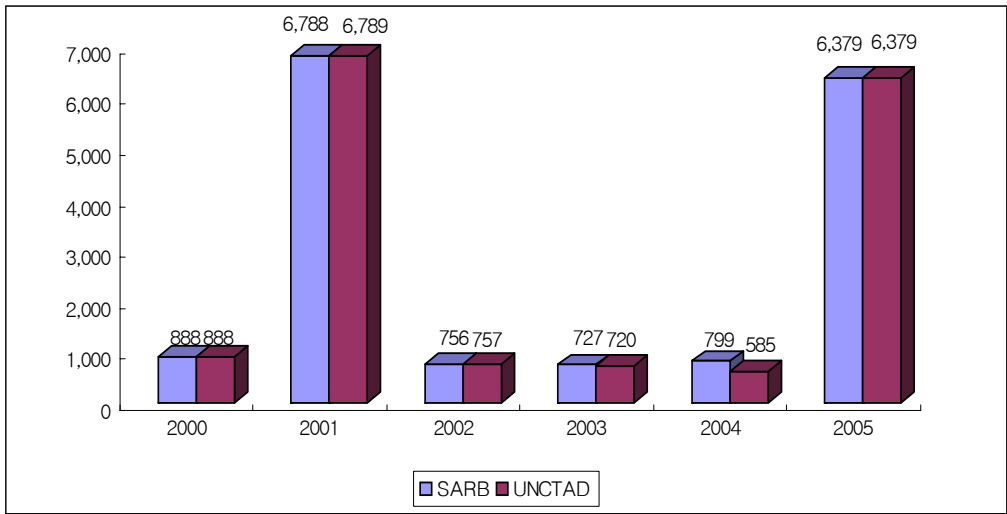
- 강성노조 및 숙련 노동력 부족
 - 남아공은 영국의 영향을 받아 노조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노조가 정치에도 참여
 - 남아공 내 유희 노동력은 풍부하나, 기술인력 부족으로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낮으며, 인건비 또한 동남아 및 동구지역에 비해 높은 편
- ※ 남아공 제조업 평균 인건비 : \$970, 동구 제조업 평균 인건비 : \$700
- 치안 불안
 - 남아공은 세계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국가로서 살인, 강도 등 강력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투자 불안요인으로 작용

2. 남아공 투자유치 동향

- 2005년 FDI 유입액 64억불, 전년 대비 700% 급증
 - 2005년 FDI 유입액은 약 64억불로 전년 대비 무려 700% 증가하였는데, 이는 영국 Barclays 은행의 남아공 ABSA 은행 인수, 영국 이동통신 기업인 Vodafone의 남아공 Vodacom에 대한 지분 확대에 따른 영향

[남아공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동향]

(단위 : U\$백만)



자료원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South Africa Reserve Bank(SARB)

□ 주요 투자유치 대상국은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

-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투자가 활발한데, 2005년 기준 남아공의 직접투자 누계액 중 유럽지역의 비중이 90%에 육박
 - 유럽 이외에 미주(6.9%), 아시아(2.9%) 지역이 주요 투자국인, 유럽 지역에 비해 투자 비중은 미미

□ 주요 투자유치 업종은 광산업 및 제조업

- 영국 Barclays의 은행의 남아공 ABSA 은행 입수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산업 및 제조업이 주요 투자유치 분야
 - 2004년 말 현재 광산업의 투자유치 누계액이 173억불로서 가장 많으며, 제조업(172억불), 금융업(155억불) 순
 - 이는 남아공이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광산개발에 대한 투자수요가 많으며, 남아공 정부의 자동차산업육성정책(MIDP)에 따

라, BMW, Toyota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남아공에 투자진출 했기 때문

3. 각 주정부별 투자환경(9개주)



□ 이스턴케이프(Eastern Cape)

- 이스턴케이프는 주요도시, 공항, 항만이 잘 갖춰져 있을뿐만 아니라 제조업분야가 크게 발달하여 세계적인 기업의 본부가 위치해있음

- 남아공 주요시장 중심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여 항공, 도로, 철도망 등의 현대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이 용이함
- 이스턴케이프개발공사(ECDC)는 경제 및 환경관광부의 정책을 이행하는 공식기관임
- 외국인직접투자 대상분야
농업(농산물, 농산품가공, 낙농품, 양모 등), 자동차산업, 전자 및 IT, 제약, 플라스틱, 섬유, 의복, 피혁, 어업, 임업 및 목제품

□ 프리스테이트(Free States)

- 남아공 아홉 개 주 중 세 번째로 면적이 크고 내륙에 위치해 있으며 주 수도는 남아공의 사법수도이기도한 블룸폰테인임
- 세계최대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금광으로 잘 알려져있고 주요 경제활동은 농업을 들 수 있으며 남아공의 “식량창고”로도 알려짐
- 프리스테이트개발공사(FSDC)는 경제 및 환경관광부의 정책을 이행하는 공식기관임
-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분야
농업용 기계 및 장비, 가죽 제혁업, 금보석/가공, 화초원예, 석유화학, 제약업, 생태관광, 의복/섬유/신발류

□ 하우텡(Gauteng)

- 남아공의 금융중심지로 교통, 기술, 통신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아프리카에 사업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하우텡은 전체 국토면적의 1.4%를 차지하여 가장 면적이 작은주이지만 남아공 GDP의 38% 이상, 재정수익의 60%를 차지하고 있음

- 하우텡경제개발청(GEDA)은 하우텡을 비롯하여 기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임
- 하우텡은 ‘블루IQ’로 불리는 자체 특구 개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데, 혁신주도형 산업, 금융 및 비즈니스서비스, 고부가가치 첨단 제조업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분야
맥주&몰트(맥아), 자동차부품, 생명공학, 비즈니스관광, 영화산업, 금융서비스, 철강 및 알루미늄 관련산업

□ **콰줄루나탈(Kwazulu-Natal)**

- 풍부한 천연자원 및 잘 발달된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때문에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산업개발의 중심지로 부상함
- 경제활동은 더반항을 중심으로 에디크위니 메트로폴과 피터마리츠버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콰줄루나탈 무역투자진흥공사는 사업타당성조사, 정부부서연락, 인프라 및 시설제공, 운영자본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 대상분야
섬유, 의복, 화학, 플라스틱제품, 조립금속제품, 자동차부품, 목재, 신발류

□ **림포포(Limpopo)**

- 광업활동이 주 경제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광물자원으로는 백금(플래티넘), 다이아몬드, 석탄, 크롬, 철광석, 구리 등이 있음
- 다른 경제활동분야는 전력발전으로 엘리스라스의 마팀바 전력발전소가 있고 남아공의 철강기업인 이스코르(Iscor)의 원료탄의 채광지역임

- 림포포는 가장 비옥한 농지를 소유한 곳으로 다양한 아열대 과일 및 견과류를 재배하고 있으며 로우펠트라고 불리는 저지대에는 차, 커피 농장이 광범위하게 산재하고 있음
- 림포포 무역투자공사(TIL)는 주정부의 공식 무역투자진흥기관으로 1996년9월에 설립되었음
-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분야
다양한 자원의 광업, 농업(복숭아, 아몬드, 카사바, 대나무), 관광, 제조업 등

□ **음푸말랑가(Mpumalanga)**

- 남아공 동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스와질랜드와 국경을 접하며 지난 20년간 전국평균을 훨씬 웃도는 건실한 성장을 하고 있음
- 비즈니스기반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우수교육기관에 의해 지원되는 준 숙련급 노동력이 풍부하고 남아공에서 가장 인기있는 관광지로 정평이 나있음
- 음푸말랑가 투자이니셔티브는 주 정부가 설립한 기관으로 무역 및 투자촉진과 잠재적 투자자들의 원활한 지역이전을 지원하고 있음
-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분야
철강&스텐레스스틸, 화학&화학제품, 농산물가공제품, 식품 외 농산품, 목재가공, 관광업

□ **노던케이프(Northern Cape)**

- 남아공 9개주중 면적이 가장 크며 국토의 30%를 차지하고 대서양과 보츠와나와 접경하고 있어 서부 아프리카 시장진출을 위한 이상적인 관문임

- 노던케이프주 남쪽을 흐르는 오렌지 강은 건실한 농업기반이고 주정부에서는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성장촉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분야
광업/광물가공, 어업/양식업, 관광업, 농업/농산물가공, 인프라

□ 노스웨스트(North West)

- 서쪽으로는 보츠와나 동쪽으로는 하우텡에 접해있는 전략요충지로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높은 수준의 관광업 및 농업이 발달해있음
- 현지산업의 수익창출능력증가, 지역 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지역자원과 관련된 국제시장 참여 등의 분야에서 투자기회가 무궁무진함
- BMW, 삼성, 네슬레, 하인츠, 보쉬 등 여러 국제기업의 지역본사가 위치함
-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분야
식품가공 및 관련산업, 관광, 호텔산업, 자동차부품, 보석, 섬유/의복 등

□ 웨스턴케이프(Western Cape)

-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며 최근에는 대규모 투자유치 프로젝트 성과가 있고 항구도시와 해안산업벨트를 중심으로 수출지향적인 산업이 재편되고 있음
- 개발경제체제로 해외무역이 이 지역 총생산의 30%에 육박하고 있음
- 웨스턴케이프투자무역 진흥청은 주요 개발투자자들의 지원을 받는 독립기관으로 1982년에 설립됨
-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분야
국제회의관광, 생태관광, 영화제작/산업, 선박수리, 컨테이너선적, 정밀공학, 농산물가공 등

4. 외환제도

□ 환율제도

- 1961년 인종차별정책으로 인한 정치적 소요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외국자본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1979년 상업통화(Commercial Rand)와 투자통화(Financial Rand)라는 독특한 이중통화제도를 도입하였음.
- 1981 ~ 82년의 경제여건 호조에 힘입어 1983년 2월 투자통화제도를 폐지하였으나, 1984년 경기후퇴와 국내정치 소요, 그리고 국제상업은행들의 단기금융 제공거부 조치로 인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되자 은행간 Credit Line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 이에 따라 1985년 9월 민간부문 외채에 대한 지불정지(moratorium)를 선언하고 투자통화제도를 재도입하였음.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정치적 불안이 해소됨과 동시에 외채문제가 해결되고 IMF 및 IBRD로부터의 차관도입이 가능해지는 시점에서 이중통화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수립하여온 바, 1995년 3월에 투자통화(FR)를 폐지하고 상업통화(CR)와 투자통화의 중간수준으로 환율을 단일화하였음.
- 이중통화제도가 폐지된 이후 모든 투자와 투자자본 회수는 상업통화(CR)로 이루어지고 있음. 외환규제 조치는 남아공 국민에게 주로 적용될 뿐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별 제한이 없음.

□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된 외환관리

- 외국인투자자금 유입은 대체적으로 제한 없음.
- 투자원금 송금 : 현지에서 매각 처분할 경우 정부허가 불필요.
- 배당금 지급 및 이익금 송금 : 배당금 지급 및 이익금 송금은 당해 연도 분에 한해 가능. 회사자산의 75%이상이 외국인 소유이고 국내 차입이 있는 경우 남아공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함.

- 외국기업의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 감면조치는 폐지되었으나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더 이상 낼 필요 없음.
- 해외차입 및 상환 : 해외차입 및 상환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요함.
- 외국에 대한 로열티 지급 : 외국회사가 해외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은 제한 없음. 남아공 회사의 로열티 지급은 중앙은행이 승인하는 경우에만 가능.
- 무역관련 지불제한
 - 수출 선수금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수입 선급금에 대해서는 승인이 필요함. 수출 대금 수취일은 180일 후까지 가능하나 중앙은행이 수출이 수출시장 보호나 신규시장 개척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360일 후까지 가능.



Ⅲ. 투자유치 제도

[나이지리아]

1. 개요
2. 세액감면 인센티브 제도
3. 진출형태별 투자절차
4. 지사 및 현지 법인 설립
5. 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대 투자

[남아프리카공화국]

1. 투자유치제도 개관
2. 투자유치 인센티브
3. 법인설립
4. 연락사무소 설립

III. 투자유치 제도

[나이지리아]

1. 개요

- 1995년 제정된 외국인투자법(Nigerian Investment Promotion Commission Act No. 16 of 1995 for Foreign Investment)은 외국자본의 기업경영을 인정하며, 투자자본을 보호하고 세액감면 및 외국인 현지체류허가(현지고용 쿼터)를 허용
- 영업에서 발생된 과실해외송금 및 소유권 이전보장 등 외국자산의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나이지리아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각종 조세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식품, 원자재, 기계류의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기술선도 산업이나 대규모 플랜트 프로젝트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산업파급 효과가 크고 국내 보존자원을 개발·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각종 혜택이 부여되며 수입 대체라 해도 단순히 부품을 수입해 조립·생산만 하는 분야는 대상에서 제외
-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최우선으로 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통신, 전력, 석유탐사, 정유 수출, 광물, 자원 개발, 호텔·여행업 등의 투자유치에 집중하고 있음
- 비석유부문 투자지원 강화를 위해 광업 및 농업부문의 외국인투자에 적극적이나 사회간접자본 미비로 미국 및 유럽계 업체들은 전력, 원유분야, 통신 등의 대규모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한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는 아래와 같은 특별 인센티브를 제시

- 3~5년간 세금 무과세(tax holidays)
- 투자액과 투자의 전략적 가치 등에 따라 로열티 지불 일정기간 유예
- 개발 지역에 대한 도로 및 전기 시설 연결
- 광산 개발 시 외국인 지분을 100%까지 허용

2. 세액감면 인센티브 제도

□ 선도산업에 대한 소득세 면제

- 공업발전법(Industrial Development-Income Tax Relief Act 22, 1971년, 1988년 개정)에 따라 선도 산업으로 지정된 분야에 투자할 경우 5년간 제세 면제

- 선도산업 지정업종(65개)

곡물, 야채, 과일재배 가공, 코코아제품 제조, 유종가공, 낙농, 축산, 원양어업 및 가공, 제염, 연·아연개발, 제철, 비철금속 정련, 중정석 개발, 나이지리아 원료사용 기초·중간 화학품, 유전굴착 재료 제조, 시멘트 제조, 유리 및 동제품 제조, 석회제조, 대리석 채석, 가공 도자기제조, 공업용 화학품 제조, 의약품제조, 외과의용 의류, 피혁제조, 식물·합섬사 제조, 금속제품 제조, 기계류 제조, 고무제품 제조, 국산원료에 의한 망의 제조, 제분, 야자유 플랜테이션 및 가공, 천연고무 플랜테이션 및 가공, 아라비아고무 플랜테이션 및 가공, 목재가공 비료 제조, 상업용 차량 제조

□ 국내원자재 사용비율 혜택(LOCAL CONTENT)

- 국내원자재 사용 비율이 아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5년간 제세의 30% 감면

※ 산업별 국산원자재 사용비율

- 농산물제조분야 80%, 농업 70%, ENGINEERING 분야 60%

화학분야 60%, 석유화학분야 70%

- 노동집약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 1,000명 이상의 노동자 고용 효과가 있을 경우 5년간 15%의 제세 감면
 - 200명 이상의 노동자 고용 효과가 있을 경우 5년간 7% 제세 감면
 - 100명 이상의 노동자 고용효과가 있을 경우 5년간 6% 제세 감면
- 부가가치 창출산업 세제혜택
 - 단순조립이 아닌 부가가치 창출 산업의 경우 5년간 10%의 제세 감면
- 훈련용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 종업원, 기술자 훈련을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5년간 2% 제세 감면
- 수출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 총 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 5년간 10%의 제세 감면
- 사회간접자본 건설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 도로, 공업용수,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비용의 20% 제세 감면
- 비경제적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 시 세제혜택
 - 비경제적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 시에는 7년간 전액 세금 면제 및 최초 투자 자금을 감가상각함
- R&D 분야 투자 시 세제혜택
 - R&D 분야 투자 시 비용의 120% 제세 감면 및 나이지리아산 원자재에 대한 R&D의 경우 140% 제세 감면

3. 진출형태별 투자절차

□ 투자진출 개요

- 외투기업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 주식회사(현지 법인)를 설립해야 하며,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외국자본에 의해 설립된 회사에 대해서 일반 국내기업과는 다른 자격을 주고 있음. 지점의 영업활동은 현재 인가되고 있지 않음

□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 철폐

- 1995년까지 나이지리아는 “기업진흥법”에 의거, 국내 경제에 대한 중요도, 자국민 관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업종별 외국인투자지분을 제한하여 왔으나 1995년 9월 이를 개편, 외국인투자 활성화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합작 및 단독투자 모두 가능

○ 외국인투자 범위 및 지분

- 석유와 Negative List(무기, 마약, 화약, 군 장비)를 제외한 모든 산업 분야에 투자가 가능하며, 50% 이상의 지분 확보도 가능(은행, 보험, 광산업 투자 가능)
-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식매매 가능, 자유로운 양수, 양도 보장

- 외국인투자자와 현지투자자가 합작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내국인 파트너의 소유지분은 납입자본금의 5% 이상이면 성립

□ 투자 유망 분야

- 나이지리아는 청량음료, 섬유, 신발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산업의 다양성이나 기술 수준에 있어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있으며 기간산업 분야도 최근에는 석유화학, 철강, 비료 공단을 준공할 정

도로 산업발전의 초기단계에 있음

- 합작투자 유망분야는 주재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센티브를 향유할 수 있는 분야와 나이지리아 기업진흥법 (Nigerian Enterprises Promotion Act)에서 정의한 유망 투자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
 - 한국에서 점차 사양화 되고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섬유, 신발)
 - 생산기지의 이전이 시급한 공해산업(금속가공, 석유화학)
 - 자원개발, 확보에 필요한 농·임·광업 분야
 - 선진국시장을 겨냥한 수출 산업
- 현지 각 주 정부에서 우리와의 합작을 요청해온 분야는 다음과 같 으며 이들의 합작 희망형태는 대부분이 한국의 설비, 기술을 도입 하는 방식임
 - 화학관련분야: 비누, PVC제품(PP shopping bag, PVC flooring, 신발, 파이프), 모기향(mosquito coil), 살충제 등
 - 식품가공분야: 농수산물 가공, 과일 주스류, 낙농품, 미곡 도정
 - 피혁가공분야: 가방, 벨트, 신발, 여행용구, 종이류
 - 섬유류: 드레스, 양말, 타올, 붕대, 어망
 - 의료용품: 붕대, 일회용 주사기 등

4. 지사 및 현지 법인 설립

□ CAC(Corporate Affairs Commission) 등록

- 필요서류
 - 정관(Memorandum of Articles) Statement of Authorized
 - Share Capital of the Company
 - 이사회 구성현황 및 리스트

- 이사회 이사 선임 증명서
- 회사 위치 확인서(Notice of Address of registered office)
- o 소요경비: CAC 등록 시 소요비용(소요기간: 14일 내외)

〈CAC 등록비용〉

일 반 기 업	등 록 비 용
Registration of Private Company with share capital not exceeding N1 million	10,000 나이라
Registration of Private Company with share capital exceeding N1 million but less than N2 million	20,000 나이라
Registration of Private Company with share capital above N2 million	Add N10,000.00 for every N1 million or part thereof.

공 기 업	등 록 비 용
Registration of Public Company with share capital not exceeding N1 million	20,000 나이라
Registration of Public Company with share capital exceeding N1 million but less than N2 million	30,000 나이라
Registration of Private Company with share capital above N2 million	Add N20,000.00 for every N1 million or part thereof.

□ NIPC 허가

- o 나이지리아 투자를 관장하는 기관은 나이지리아 투자청(Nigerian Investment Promotion Commission, NIPC)이며 투자제한 대상이 아닐 경우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진출 기회를 보장함
- o 기본서류
 - 설립자 및 주주 보유 지분 현황

- 회사명 및 설립자본금, 설립목적
 - 100% 외국인투자가 아닐 경우 합작투자계약서
 - 회사 정관
 - 이사회 구성현황 및 명단
 - 이사회 이사 선임 증명서
 - 회사 위치 확인서(Notice of Address of registered office)
 - CAC 등록 수수료 영수증
 - Tax Clearance Certificate
- 투자청(NIPC) 제출 서류
- NIPC 소정 양식 기재 후 사본
 - NIPC 소정양식 구매 영수증 사본
 - 회사 설립 등록증 사본
 - Tax Clearance Certificate 사본
 - 회사 정관 사본
 - 회사 지분 구성확인 서류 발급 시 인지세 지급 영수증 사본
 - 합작투자계약서 사본
 - 사업계획서 사본(필요설비 목록 포함)
 - 회사 위치 확인서(공장 또는 사무실 임대계약서로 대체가능) 사본
 - 이사 구성 현황 및 명단(성명, 주소, 국적, 직책)
 -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직위 현황표
 - 외국투자회사의 카탈로그 및 브로슈어 사본
- 투자청에는 사전 준비서류와 함께 투자요청 NIPC 양식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하기 허가를 취득함
- Business Permit and Expatriate Quota
 - Pioneer Status and Other Incentives
- 이상의 절차를 이행하면 NIPC로부터 투자승인 및 영업허가를 득할 수 있으며, 다음의 절차를 마쳐야 함

- 해외로부터 자본금 송금 및 납입
- 은행으로부터 자본금 송금관련 Certificate of Capital Importation
증명서를 발급
- Work Permit(근로 허가) 발급 및 체류비자 발급
- 소요비용: 5천 나이라
- 소요기간: 2~8주
- 참고사항: 외국인투자 최소 자본금은 2백만 나이라임
-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내무성)
 - 필요서류
 - Business Permit 신청서, 비즈니스 영역 및 인원구성 내용서
 - 소요비용
 - 사장 또는 Technical Director 직위: 2천만 달러
 - 기타 직위: 2년간 한시적 체류비자 제공, 매 2년 갱신 시 2천 나이라 소요
 - 참고사항
 - 회사 자본금이 500만 나이라 이상이면 2명의 외국인 채용 쿼터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1,000만 나이라 이상이면 4명의 쿼터가 부여됨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 소요기간: 1~2주
 - 소요비용: 5,000나이라
 - 참고사항
 - 실재는 자본금 유입 없이 유입된 것처럼 서류만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와 관련 브로커를 고용,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함
- 현지 법인 설립 절차
나이지리아 내 회사설립은 반드시 현지 변호사를 지정, 설립업무를 대행토록 해야 함

- 신청 서류의 작성
 - 변호사를 통해 아래 서류를 작성, Corporate Affairs Commission (Lagos Liaison Office)에 회사등록을 신청함
 - 회사 정관 (Memorandum & Article of Association)
 - 주식 배당 (Return of Allotment of Shares Form CAC 2.5)
 - 이사 등록 (Particular of First Directors of Company Form CAC 2.3)
- 회사등록이 완결되면 Corporate Affairs Commission으로부터 회사 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교부
- 변호사는 설립된 회사에서 근무하게 될 주재원의 할당인증서 (Expatriate Quota Position) 확보를 위해 회사등록증을 포함한 관련서류를 현지 이민국(Federal Ministry of Internal Affairs)에 제출함
- 동 절차가 완료되면 Federal Ministry of Internal Affairs는 아래와 같은 증명을 발급함
 - 주재원 할당인증서 (Expatriate Quota Position)
 - 영업허가증 (Business Permit Immigration Regulation 1963)
 - 주재원 거주허가증 (Combined Expatriate Residence Permit & Alien Card Scheme)
- 주재원 거주허가증(Combined Expatriate Residence Permit)을 획득하면 이민국을 재접촉하여 나이지리아 출입국이 자유로운 Re-entry Visa를 수령함
- 공장 설립 절차
 - 공장부지 선정
 - 나이지리아에서는 상업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수 없으므로 공업지역

에 토지를 매입 또는 임차해야 함

- 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라 Industrial Estate가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공장이 밀집한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함
-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투자기업이 Industrial Estate에서 부지를 매입하거나 또는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아무런 혜택을 제공해 주지 않
- 공장부지 매입 또는 임차
 - 공장부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서는 약 2백만~4백만 달러가 소요되며, 토지가격은 토지 소유자와 협상이 필요함
 - 나이지리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임차료가 해마다 연 8~10%씩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적 운영을 목적으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임차하는 것보다 유리함
- 공장 설립
 - 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가 확보되면 회사를 설립하고 기술 및 자본을 들여와야 함. 외국인의 경우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사 또는 현지법인 절차에 따라 CAC 등록 후 NIPC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절차와 방식은 상기의 절차와 동일함
- 연락사무소 설립
 -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현지 법인 설립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 “지사 및 현지 법인 설립”을 조하여, CAC 등록을 하면 사무소 개설을 할 수 있음
 - 직접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경우 사무실 임차료, 운영비, 인건비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지 바이어 또는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이 효과적임

5. 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대 투자

□ 산업단지 현황

- 나이지리아 정부에서 일정 토지를 저가로 임대해 주는 INDUSTRIAL ESTATE는 산업단지 개념과 유사한데, 주로 1970, 1980년대에 조성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조성된 산업단지는 전무
- 36개 주정부가 나름대로의 계획에 의거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산업단지 파악은 어려우나 주로 주요 도시인 Lagos, Port Harcourt, Kaduna, Kano, Enugu 등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이들 산업단지에는 품목별 구분 없이 모든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으나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분야별	산업단지
REFINERY AND PETRO CHEMICALS	KADUNA, WARRI, PORT HARCOURT, EMEME
IRON AND STEEL	AJAOKUTA, WARRI, OSHOGBO, KATSINA, JOS
FERTILIZER	ONNE, PORT HARCOURT, KADUNA, MINNA, KANO
LIQUIFIED NATURAL GAS	BONNY
ALUMINIUM SMELTER	KOT ABASI, PORT HARCOURT

□ 자유무역지대

남동부 Calabar 지역에 Calabar Export Processing Zone이라는 나이지리아 최초의 자유무역지대가 있으며 동 자유무역 지대는 1999년에 거의 완료되었으나 최근 일부 사회간접자본이 본격적으로 갖춰지면서 외국계 기업들의 입주가 늘어나기 시작함

□ Calabar Export Processing Zone 개황

○ 위치 및 면적

- Calabar Export Processing Zone은 나이지리아 남동부의 Cross River State의 역사적인 도시 Calabar 시로부터 7km 지점에 위치

하며 총 면적은 약 300헥타르임

- 참고로 Calabar 공항에는 현재 국제 및 국내선 총 4편이 운항하고 있으며 내륙은 물론 인근 아프리카 국가들과 연결되어 있어 물류 및 경제적인 중심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주요 노선 취항 현황〉

항 공 사	운 항 노 선
ADC Airline	하루 3편 국내선을 운항하며 인근 가나,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및 기니 항공과 연결
Nigerian Airway	국내선 운항, 카메룬 및 가봉과 국제선 연결
Concord Airline	국내선 운항, 적도 기니와 국제선 연결

- 입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 100% 외국자본 투자 및 소유권 인정
 - 생산제품의 25%를 내수시장 판매 허용
 - 신청서 발급 및 승인 등 행정절차를 위한 One-Stop 지원 서비스
 - 수출입 허가 불요
 - 원자재의 면세 수입
 - 자본, 이윤 및 지분의 무제한 과실송금 허용
 - 일정기간 과세 면제 및 노동쟁의 불허
 -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각종 조세 및 관세로부터의 면제
 - 공장건설 기간 중 공장부지 임대료 면제
- 자유무역지대 내 설비 및 시설 현황
 - 단지 내 최상의 도로망
 - 무제한 급수 및 송전
 - 통신 통신시설
 - 표준형 공장건설 제공가능
 - 금융기관/세관/창고
 - 각종 음식점 및 위락시설

- 입주유치 업종 현황
 - 제과 및 식품제조업
 - 목제품 및 수공예품
 - 석유화학제품/플라스틱 및 고무제품/화장품 및 기타 화학제품
 - 철강 및 기계류
 - 섬유류/기성복/피혁제품
 - 전기 및 전자제품
 - 교육기자재 및 스포츠 장비 생산
 - 의료장비 및 의료기기/의약품 제조업
- Calabar 수출가공지대 투자 시 장점
 - 저렴하고 숙련된 양질의 노동력 활용 가능
 - 원유는 물론 Limestone, Timber, Oil Palm, Rubber, Cocoa, Livestock 등 풍부한 자원 활용 가능
 - 가공지대내 생산 제품의 25% 내수시장 판매 보장
 - 가공지대 내 생산품의 대 유럽 및 미국 수출 시 쿼타 미적용
 - 가공지대 내 생산품은 EU 및 로메 협정 체결국간 특혜관세 적용
 - ※ 로메협정:EC 9개국과 ACP(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지역)개도국 46개국 간 체결된 무역협정
 - 가공지대 내 생산품은 ECOWAS (서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 회원국 수출시 할인관세 적용
 - 유럽(5~7시간 비행시간) 및 미국(10시간 비행시간)까지 일일 생활권
 - 양질의 시설이 완비된 첨단 항구 이용 가능
 - 인근 서부 아프리카는 물론 동부 및 남부 아프리카도 4시간 이내 항공수송 가능
 - Calabar시로부터 나이지리아 전국에 이어지는 도로망 활용

□ 자유무역지대 입주 절차

- 투자신청 및 투자신청서 접수
- 표준 공장건물 및 산업단지 검사
- 투자신청서 제출
- 투자신청서 심사 및 승인
- 회사설립 등록 신청
- 공장구매 또는 건설
 - 표준공장 구입 시: 승인 3개월 이내 공장판매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납입. 납입 후 5개월 이내 전액 납부
 - 표준공장 임대 시: 1년간 임대료를 선금으로 지급
 - 표준공장 리스임대: 승인 즉시 40% 임대료 지불, 최초 5년 내에 30% 임대료 지불, 10년째 나머지 30% 지불
 - 완비된 공장부지 임대: 승인 후 40% 선금 지급 및 공장 건설, 최초 5년 30% 지급, 10년째 나머지 30% 지불
- 투자 자본금 송금
- 투자 지출금 평가
- 생산 전 사전 생산시설 검사
- 25% 내수판매 면허 획득
- 소요기간: 투자승인 신청서 제출 후 1달

※ 공단관리기관(Nigerian 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 NEPZA)

지난 1992년 제정된 Nigerian 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 (NEPZA) 설립법 제62호에 의해 수출가공지대 관리를 위해 설립된 관리공단 NEPZA가 단지 내 입주업체의 모든 행정절차를 전담하고 있으며, 공단 본부는 수도 아부자(ABUJA)에 있고 라고스(LAGOS)에는 연락사무소 소재

- 주소: 4TH Fl.,Radio House Herbert Macaulay Way(South) P.M.B. 037, Garki, Abuja, NIGERIA
- 전화: (234-09) 2343060
- 팩스: (234-09) 2343061

[남아프리카공화국]

1. 투자유치제도 개관

□ 투자유치 정책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대부분 철폐 → 자유로운 투자환경 조성
 - 남아공 정부는 높은 실업률(25.6%) 해소, 경제발전, 기술이전 등을 위해 투자 유치에 매우 적극적
 - 이를 위해 남아공 정부는 과거 10년 동안 불필요한 투자 인허가 제도를 대부분 폐지하거나 대폭 간소화
 - 이에 따라, 현재 외국 기업이 남아공에 직접투자를 할 때,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신고절차만 밟으면 됨.
-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 가능 : 은행, 방송 분야는 예외
 - 남아공 정부는 은행 및 방송분야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 대해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를 허용
 - ※ 다만, 외국인 지분이 75% 이상일 경우에는 남아공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에 제한을 받음.
 -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가 제한되어 있는 은행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15%를 초과하는 경에는 Registrar of Deposit-Taking Institution의 승인이 필요하며, 49%를 초과하게 되면 재무부의 승인이 필요
 - 방송 분야는 현재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가 20%로 제한되어 있는데, 향후 35%로 상향 조정될 전망
- 과실 송금 : 법인세 납부 후 과실의 100% 본국 송금 가능

- 다만, 남아공 비거주자들의 지분이 75% 이상이고(or가 아닌 and 조건) 남아공 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있을 경우에는 남아공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요
- 외국인 투자유치법령 : 부재
 - 남아공에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과 같은 투자유치 법령은 없으며, 외국기업은 남아공 국내법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대우받고 있음.
 - 다만,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남아공 상무부 내에 『Trade Investment South Africa』 라는 투자유치 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 대해 각종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
- 투자유치 기관 : Trade Investment South Africa(TISA)
 - 남아공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상무부(Department of Trade & Industry) 내에 국가 투자유치 기관인 TISA를 설치, 운영
 - TISA는 투자유치정책 입안,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투자 지원,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 남아공 내 9개 주정부도 외국인 투자유치 기구 운영
 - 국가 투자유치 기관인 TISA 외에 남아공의 9개 주정부도 모두 주 정부 차원의 외국인 투자유치 기구를 운영

2. 투자유치 인센티브

가. 인센티브 개요

□ 인센티브 해당 분야

- 남아공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아래 5개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인센티브를 제공

- ① 광범위 투자(Broad Investment in South Africa)
- ② 흑인경제 육성정책(Black Economy Empowerment)
- ③ 기술혁신(Innovation and Technology)
- ④ 수출경쟁력 제고(Competitiveness and export capabilities)
- ⑤ 산업개발지대(Industrial Development Zones)

□ 인센티브 운영

- 남아공의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는 투자건별로 세금면제, 현금 및 금융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 세금면제의 경우, 법인세 면제는 없으며 부가세 및 수입관세 면제, 관세 리베이트 형태로 제공
 - 현금지원은 교통, 통신, 전력, 쓰레기 처리시설, 연료공급 시스템 등 핵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일 경우에만 지원되는데, 투자비용의 최대 30%까지 지원
 - 금융지원은 남아공 IDC(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에 의해 운영되는데, IDC는 남아공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거나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기업에 대해 장기저리의 특혜 금융을 제공

나. 인센티브 주요 내용²⁾

□ Industrial Development Zone(IDZ)

- 남아공 정부는 제조업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산업개발지대(Industrial Development Zone; IDZ)』를 운영

2) 남아공 정부는 최근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정비를 위해, 현행 인센티브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바, 현행 인센티브가 수정 및 철폐되거나 새로운 인센티브가 도입될 수 있음.

- IDZ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공항 또는 항구 인접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잘 갖추어진 사회 인프라, 면세혜택 등으로 인해 외국 기업의 투자 유망지역으로 부상
 - IDZ 운영 주무부처는 남아공 상무부이며, IDZ 입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정부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짐.
 - IDZ는 특정 산업(예.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등) 단지가 아닌 전반적인 제조업 육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산업 단지임.
- 제공 혜택
- 세관 통제구역(Customs Controlled Area) 운영 → 통관편의 제공
 - 원부자재 수입에 대한 무관세 혜택
 - 남아공 현지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물품에 대해 부가세 면제
 - 잘 갖추어진 사회 인프라
- 운영 현황
- 현재 남아공에서 운영되고 있는 IDZ는 4개이며 소재 지역은 Port Elizabeth, East London, Richards Bay, Johannesburg

[남아공 산업개발지대(IDZ) 현황]

IDZ	소재지	주력분야
Coega IDZ	Port Elizabeth	전자, 자동차, 섬유, 중공업
East London IDZ	East London	자동차, 섬유, 의약품
Richards Bay IDZ	Richards Bay	철강, 화학, 식음료 가공
JIA IDZ	Johannesburg	귀금속 제조 및 식음료 가공

□ **Critical Infrastructure Programme(CIP)**

○ 주요 내용

- 도로, 철도, 전력, 통신 등 핵심 사회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게 제공되는데, 10~30%의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

○ 운영 목적

- 사회 인프라 확충을 통한 남아공 산업의 경쟁력 제고,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등

○ 세부 지원대상

- 사회 인프라 건설관련 직접비, 인건비, 소요자재, 신규 자본재 구입지 등

□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s For Industry Programme (THRIP)**

○ 주요 내용

- 남아공 내 인력 및 기술개발을 위해 남아공 정부와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과학기술 분야 연구
- 동 인센티브는 남아공 국립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이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외투기업은 NRF와 공동 출자하여 과학기술 분야 연구가 가능
- 동 인센티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적자원 개발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남아공 정부(NRF)와 외투기업의 출자 비율은 1:2

□ **Support Programme for Industrial Innovation(SPII)**

○ 목적 및 주요 내용

- 외국인 투자를 통해 신제품 개발 및 공정 혁신 → 남아공 제조업 및 IT산업의 발전을 도모

- 동 인센티브는 주로 신제품 개발 또는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기초 연구가 끝난 단계부터 시제품(Pre-production Prototype) 완성단계까지 지원되는데, 아래 3가지 프로그램에 의해 시행

○ 프로그램 1 : Product process development

- 소규모 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비용의 65~85% 까지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 한도는 프로젝트 당 R500,000(U\$ 71,400)
- 지원비용은 해당기업의 흑인지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데, 세부 지원 비율은 아래 참조
 - ▶ 흑인 지분비율 25% 미만 : 65%
 - ▶ 흑인 지분비율 25%~50% : 75%
 - ▶ 흑인 지분비율 50% 이상 : 85%

○ 프로그램 2 : Matching Scheme

- 종업원 200명 이상, 매출액 730만불, 자산규모 270만불 이하의 중소기업에게 제공되는데, 추후 상환해야 함.
- 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비용의 50%까지 지원되며 최대 지원액은 프로젝트 당 R1,500,000(U\$ 214,000)

○ 프로그램 3 : Partnership Scheme

-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비용의 50%까지 지원되며 최소 지원액은 프로젝트 당 R1,500,000(U\$ 214,000)
- 지원금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상업화되었을 경우에 한해 상환

□ Film Incentive

○ 목적 및 운영기관

- 당초 남아공 영화 및 방송 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된 인센티브로서

남아공 내 영화산업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에게도 해당됨.

- 동 제도는 남아공 국립영화영상재단(National Film and Video Foundation)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주요 내용 : 세금 리베이트

- 남아공 내에서 영화, 다큐멘터리 및 방송 드라마 제작에 R25백만(U\$350만) 이상을 투자한 기업에 대해 세금 리베이트를 제공
- 최대 리베이트 금액은 R10백만(U\$143만)이며, 현재 동 인센티브제도 시행을 위해 연간 2005/2006 회계연도에 R25.6백만(U\$366만)의 예산이 배정된 바 있음.

□ **Export Marketing & Investment Assistance Scheme(EMIA)**

○ 목적 : 수출 촉진

- 남아공 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수출을 위해 투입된 각종 비용을 보조해주거나 세금혜택 부여

○ 주요 내용

- 해외 시장조사, 시장개척단, 수출 상담회, 전시회 개최 등과 관련하여 소요된 여행경비 및 마케팅 자료 제작비용을 보조
- 수출상품 생산에 투입된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면제

□ **Motor Industry Development Programme(MIDP)**

○ 도입배경 : 남아공 자동차산업 육성

- 남아공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 및 연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세법(Customs and Excise Act)에 의거 1995. 9. 1일 부로 자동차산업 육성정책(MIDP)을 시행 → 2012년 종료 예정

- 해당업종
 - 남부아프리카 관세동맹(SACU)³⁾ 회원국 내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생산, 수출업체
- 주요 내용
 - SACU 회원국 내에서 자동차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부품 중 완성차 가격(공장도 가격 기준)의 27%까지 면세혜택을 부여
 - 남아공 현지에서 생산되어 국외로 수출되는 자동차 수출액에 따라 완성차(승용 및 상용) 및 부품 수입 시 관세 리베이트 제공
 - 남아공 내 신규 자동차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투자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관세혜택을 제공

3. 법인설립

□ 남아공 법인 개요

- 남아공 내 가장 일반적인 법인 형태는 회사(Company) 및 동족회사(Close Corporation) 두 가지임.
- 회사(Company) 개요
 - 가장 흔한 법인 형태로서 남아공에 투자진출한 대부분의 외국기업이 이러한 형태로 등록됨.
 - 회사(Company)는 남아공 내에서 독립된 법인으로 취급받으며, 남아공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대부분 이러한 형태로 등록이 되어 있음.

3) SACU(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 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레소토 등 5개국으로 구성된 남부아프리카 관세동맹체

- 회사(Company)는 상장회사와 개인회사로 구분되는데, 상장회사(Public company)는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회사를 말하며 개인회사(Private company)는 상장되지 않는 법인 형태

○ 동족회사(Close Corporation) 개요

- Close Corporation은 소규모 기업에 적합한 법인 형태로서, 법인 등록 시 최고책임자(director)를 보유할 필요가 없으며, 구성원(member)들만 있으면 되는데, 구성원은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함.
- Close Corporation은 Company보다 등록요건이 간소하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소규모 기업들이 Close Corporation으로 등록되고 있는데,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회계사는 지정해야 함.
- 매년 9.1까지 Annual Return(연차보고서) 제출

* 수수료 : 매출액 R5천만 이하는 R100, R5천만 초과시는 R 4,000

□ 법인 설립 절차

○ 회사(Company) 등록 절차

- 남아공 회사등록청(CIPRO; Compan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egistration Office)에 회사명 제출



- 외부 회계사를 지정하고 관련 서류를 회사등록청에 제출



- 기타 제출서류 : Memorandum of Association,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Power of attorney, Financial tear-end, 회사주소, 최고책임자 및 직원들 정보



- 상기 서류를 모두 회사 등록청을 직접 방문하며 서면 제출하면 등록번호 부여

- 관련 협회를 접촉하여 회원사로 등록가능한지 문의
- ↓
- 은행계좌 개설

[회사(Company)설립 신청 시 제출 서류]

제출서류	목적	수수료
CM5	Application for reservation of a name	R50
Power of Attorney	Authorization to act on behalf of the company	-
CM22 (to be lodged in duplicate)	Notification of situation of registered and postal address	None
CM29	Return containing particulars of directors officer	None
A set of CM46 (to be lodged in duplicate)	Application for certificate to commence business	R60
CM47(each director)	Statement by directors regarding adequacy or inadequacy of share capital	None
CM31	Consent to act as Auditor	None

자료원 : 남아공 회사등록청(CIPRO)

- 동족회사(Close Corporation) 등록 절차
 - 남아공 회사등록청(CIPRO)에 회사명 제출
 - ↓
 - 등록서류(Founding statement application, CK1 form 2부, CK7 form, 외부 회계사 확인서) 제출(우편 또는 서면제출 모두 가능)
 - ↓
 - 등록번호 부여(소요기간 : 평균 5일)

4. 연락사무소 설립

□ 연락사무소 개요 및 등록절차

- 남아공에서는 원칙적으로 어떤 외국 회사라고 현지 법인 형태가 아닌 연락사무소(Local branch of a foreign company) 설립이 가능하나, 은행 및 보험업은 연락사무소 개설이 불가
- 연락사무소는 남아공 회사법 제32조 외국기업(External Company) 조상의 적용을 받으며, 남아공에 연락사무소 개설 이후 21일 이내에 남아공 회사등록청(CIPRO)에 신고해야 함.
- 연락사무소 등록 필요 서류
 - 등록신청서(Application form) CM27, CM37
 - 회사명, 회사자본금액, 회계연도 종료일,
 - 각서 사본(Certified copy of memorandum), 회사가 소속된 협회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of the company) 및 남아공 공용어로 번역된 정관
 - 사무실 주소
 - 외부 회계사 확인서
 - 지점의 회계연도 통보(Notice of financial year-end)
 - 최고 책임자 및 현지직원 정보
- 소요비용 :
 - 남아공 회사등록청에 납부비용 500Rand(약 80달러)
 - 부가세 : Authorized Share Capital 금액의 0.5%를 납부



IV. 조세 제도

[나이지리아]

1. 나이지리아 국세청
2. 개 황
3. 법인세
4. 소득세
5. 부가세
6. 원천세
7. 석유소득세
8. 기타세목

[남아프리카공화국]

1. 남아공 국세청
2. 조세제도 개황
3. 법인세
4. 개인소득세
5. 자본이익세
6. 기타조세

IV. 조세 제도

[나이지리아]

1. 나이지리아 국세청(FIRS, Federal Inland Revenue Service)

- 국세청의 임무
 - 납세협력과 조세징수를 최적화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세무시스템 구성
- 국세청 조직도



2. 개 황

□ 낙후된 조세정책

- 나이지리아 조세업무는 FIRS(The Federal Inland Revenue Service)가 담당하고 있고 과세수준은 다른 서아프리카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임
- 나이지리아 조세당국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정부 부처간 갈등 및 관료주의로 인해 조세조항 개정에 상당시일 소요

□ 특정산업지원 세제

- 천연가스 개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5년의 면세기간과 플랜트 및 기계류 등의 자본재 취득에 가속상각법을 인정하고 있음
- 외채이자에 대한 면세범위를 제한하거나 수출가공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혜 일부 제한 및 손실이월기간을 4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조세법 개정 추진중임

□ 조세구분

나이지리아 조세 제도는 매우 복잡한데 연방정부세, 주정부세, 지방정부세, 계약세(자본이익세, 부가세, 교육세, 인지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

□ 연방정부세(Federal Government Tax)

- Companies Income Tax(법인소득세)
- Withholding Tax on Companies(원천세)
- Petroleum Profit Tax(석유세)
- Value Added Tax(VAT)(부가가치세)
- Education Tax(교육세)

- Capital Gain Tax(재산세)
 - Stamp Duties Involving Corporate Entry(인지세)
 - Personal Income Tax(개인소득세)
 - 군인, 경찰, 수도 Abuja 거주민, 외국기관, 외국인 대상
- **주정부세(State Government Tax)**
- Personal Income Tax(개인소득세)
 - Capital Gain Tax(재산세)
 - Stamp Duties(인지세)
 - Pools Betting, Lotteries, Gaming and Casino Tax
 - Road Tax(도로세)
 - Business Premises Registration and Renewal Levy
 - Development Levy (Individual Only)
 - Naming of Street Registration Fee in State Capital
 - Right of Occupation Fees in State Capital
 - Rates in markets where state finances are involved
- **지방정부세 (Local Government Tax)**
- Shops and KIOKS Rates
 - Tenement Rates
 - On and Off Liquor License
 - Slaughter Slab Fees
 - Marriage, Birth and Death Registrarion Fees
 - Naming of Street Registration Fee
 - Right of Occupancy Fees
 - Market/Motor Park Fees
 - Domestic Animal License
 - Bicycle, Truck, Canoe, Wheelbarrow and Cart Fees

- Cattle Tax
- Merriment and Road Closure Fees
- Radio/TV License and Vehicle Radio License
- Wrong Parking Charges
- Public Convenience, Sewage and Refuse Disposal Fees
- Customary, Burial Ground and Religious Places Permits
- Signboard/Advertisement Permit

3. 법인세

□ 주요특징

- 1990년에 제정된 Petroleum Profits Tax Act(PPT)는 석유자원개발 관련 기업에 대해 과표대상을 기업이익의 85%로 설정하고 있고 사업개시 후 5년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65~75% 수준으로 과세소득을 규정
- 지사(지점)설립이 매우 까다로운 나이지리아 특성상 대부분의 외국 기업이 직접법인을 설립하고 있음
- 연매출 50만 나이라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 0.25~0.5% 수준의 최저 과세수준을 적용하고 있고 적용대상은 외국지분이 25% 미만이거나 비농업분야의 산업을 영위할 때만 가능함
- 법인설립후 6개월안에 사업 개시하지 않을 경우 N500부과, 다음해는 N400부과(Preoperational Levy)

□ 납세의무자 : 나이지리아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내·외국법인

□ 과세대상소득

- 거주자는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임
 - 영문표현 : accruing in, derived from, brought into, received

in Nigria

-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이 과세대상이나 턴키공사 수행시 Inside & Outside의 구분없이 전체가 과세대상임

□ 면제소득

-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친목단체의 소득
- 종교, 기부, 교육 등으로 발생한 비사업적 소득
- 스포츠활동을 촉진시키기위한 회사의 소득
- 무역연합법(Trade Union Acts 1973)에 따른 무역연합체의 소득

□ 조세면제 이자소득

- N 150,000 이상인 외화차입(차입기간 10년이상)관련 이자
- 차입기간 5~10년 기간관련 이자는 당초세율의 50%과세

□ 세율

- 일반법인 : 30%(1996.1월부터)
- 소규모법인 : 20%
 - 연매출액 N1백만 또는 제조, 농업, 광산, 수출기업의 경우
- 최저한세(Minimum Tax)
 - 이익이 없거나 납부세액이 과세최저한 미만일 경우
 - 매출액이 N500,000 미만일 경우에는
 - * 영업이익의 5% 또는 순자산의 0.5% 또는 자본의 0.25% 또는 회사연매출액의 25%
 - 매출액이 N500,000 이상일 경우
 - * N500,000 이상에 적용될 첫 세율의 50%
 - 예외 : 사업개시 첫4년동안과 농업관련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음

□ 신고 및 납부

-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이내(매년 6월30일까지)
 - 신규등록법인 : 법인설립일로부터 8월내
 - 지연시 벌과금 - N25,000+매월 N5,000(2개월 이상시)
 - 위 위반이 담당자의 동의나 묵인으로 야기되었을 경우 당사자는 N100,000의 벌과금과 2년이하의 징역
- 분할납부제도 : 세금을 6회에 걸쳐 분할납부가능
- 납부불성실가산세 : 10% 벌과금 +지연이자(상업이자율 21~25%)
- 자진신고시 1% 세액공제 혜택부여

□ 신고방법

- 실질이익에 대한 세무신고 (연1회 세무신고시 재무제표를 제출)
- 국세청의 매출액 대비 인정과세권 : 매출액의 6%
 - 과세할 이윤이 없거나, 이윤이 거래유형에 비해 낮을 경우
 - 과세할 이윤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며
 - 비거주자는 고정사업장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거나 텀기공사수행시

□ 손금의 범위

- 과세대상 소득의 창출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손비인정
- 본사 간접비 부인, 감가상각비는 부인하나, 자산을 포함한 비품에 대해 자본상각

□ 자본상각

- 자본상각과 관련한 산출세액 계산
 - ① 손익계산서상 손익산출 (감가상각비 비용반영후)
 - ② 손익 + 감가상각비 (교육세 계산의 근거 : ②*2%)

③ ②- 자본상각

상각자산	초기상각	매년상각
빌딩	15%	10%
설비 및 장비류	50%	25%
차량	50%	25%
사무비품 및 가구류	25%	20%

④ 산출세액 = ③*30% (신고시 교육세과 함께 납부)

□ 결손금의 공제

- 영업손실은 4년에 걸쳐 상각가능
- 원천징수세는 조세의 예납으로 향후 납부세액 또는 추징세액 발생 시 상계하고 환급관련 법규는 없음

□ 원천징수

- 나이지리아내의 영업활동과 관련, 하청사 대금지급시 원천징수
 - ① 발주자가 대금지급시 원천징수 후 1개월이내 세무서에 납부
 - ② 미징수 및 납부지연시 벌과금 : 징수액의 10% + 상업이자
 - ③ 기술용역 및 관리비 : 10%, 건설 및 자재공급관련활동 : 5%

□ 국세청 시행령

- 국세청 시행령 (Circular No.9302)
(비거주법인의 이익계산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율 결정방법)
과세의 일관성과 납세자에게 불확실성을 배제코져, 아래의 경우에는 매출비율에 따른 방법 적용
 - ① 턴키공사 수행에 따른 영업활동일 경우 : 매출액대비 이익률 20%
 - ② 과세 : 간주이익(매출의 20%)×법인세율(30%) = 세액 6%
법인세(매출의 6%) - 원천징수(5%) = 추가납부 1%

- 고정사업장이나 종속대리인을 통한 영업활동(자문, 기술과 중개)의 경우 매출액대비 10%의 원천징수세 납부로 납세의무 종결

4. 소득세

□ 과세대상 및 기준

-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개인소득에 대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소득에 따라 5~25%의 차등 과세.
- 거주자는 국내·외 수입에 대해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의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함
- 국내 거주 외국인은 해외에서 얻은 수입을 국내로 반입 및 수취하는 경우에 대해 과세됨.
- 무국적자(Expatriate)에 대한 특별한 세금조치는 없음.

□ 개인이 거주자로 간주되는 요건

- 고용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거주회사의 외국인 근로자
- 12개월에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비거주회사의 외국인
- 현지인의 경우에는 체류기간과 무관함

□ 세 율

과세대상소득(나이래)	세 율(%)	세금납부범위(나이래)
0 ~ 10,000	5	0~500
10,000~20,000	10	1,000~1,500
20,000~40,000	15	3,000~4,500
40,000~60,000	20	4,000~8,500
60,000 ~	25	-

□ 과세기준

- 개인의 사업 및 투자에 대한 과세대상 소득은 고정자산 매각소득을 제외한 모든 수입에 대해 개인공제와 제 비용공제 후 산정
- 부부 분리과세
-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Pay As You Earn(PAYE)제도에 따라 월급에서 공제분을 차감하고 월별 납부.
- '91년1월 1일부터 과세대상 개인은 매 과세년도 개시 후 90일 이내에 세금환급 신청을 해야함.

□ 각종 공제

-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공제
 - 소득공제 : 소득의 20%
 - 개인공제 : N5,000
 - 자녀공제(4명 한도) : 각 N2,500
 - 부양가족공제(2명 한도) : N2,000
 - 보험료공제 : 무제한
 - 별거수당공제 : N300
 - 주택수당 공제(Rent Allowance) : 급여의 29%, 최대 연 N100,000까지 공제
 - 교통수당 공제(Transport Allowance) : 연 N15,000까지 공제
- 기타공제
 - 국내·외에서 계약되는 모든 보험료는 공제가능.
 - 비거주자일 경우 완전한 과세산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소득 및 개인 공제만을 받을 수 있음. 단, 연금생활자는 모든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이외에 투자수입 발생시 이는 별도 수입으로 처리되며 이러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만이 공제대상이 됨.

□ 기타과세요건

- 거주 투자자의 경우 수입창출을 위해 투입된 비용을 공제하고 사전 계획된 개인별 세율(Scheduled Personal Tax Rates)로 과세되는 반면 비거주 투자자의 경우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최종납세액이 됨.
- 비거주인으로서 투자수입이나 이사 급여(Director's Fee) 발생시에 세금환급신청 불가.
 - 단, 합작사업으로 인해 수입지분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세금환급신청 가능.

□ 납부 및 Penalty

- 매월 급여 지급시 공제후 14일 이내에 주세무서(State Tax Office)에 납부
- 지연납부시 10% Penalty 및 이자부과, 미납사실 확인시 200% Penalty 및 이자 부과

□ 참고사항

- 과거 급여지급시 각종 수당의 누락 또는 소득공제 해당되지 않는 항목으로 편법 적용지급하여 왔으나 세무감사시 적발사항으로 지적되어 각 현장 및 지원사무소에서 급여명세표 작성시 편법 적용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함
- 상기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한국인)의 급여수준 책정은 해당 세무서와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절세가 유일한 방안임.

5. 부가세

□ 기본개념

-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거의 모든 상품 및 대부분의 서비스에 대해 5% 적용
- 식료품, 서적 등의 교육자료, 유아용품, 비료, 농업 및 원예약품, 농업용 기계 및 농업용 수송장비, 의약품 및 의료품 제외
- 과거의 영업세(Sales Tax) 대체
- Oil & Gas 부분에서는 공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후 납부('07.11.1 부터)
- 종류
 - Output VAT(매출에 대한 VAT) 및 Input VAT(물품구매 및 수입 등에 대한 VAT)로 구분

□ 비과세품목(VAT exempted goods and services) :

- 의약관련 생산품 및 의료활동
(Medical and Pharmaceutical products and Medical services)
- 기초식품류(Basic foods items)
- 교육관련(Books and Education materials, School fees, Levies etc)
- 농업관련 장비류, 비료 등 (Agricultural equipment & products, Fertilizers and veterinary medicines)
- Oil down stream 분야 관련장비, 기계류 등
(Plant, Machinery and equipments purchased for utilization in the down stream sector of Petroleum Project)

□ 납부방법

- 매월 자체산정분을 해당지역 연방세무서(FBIR ; Federal Board of Inland Revenue)에 자진 신고
- 현지법인이 라고스(Lagos)에서 영업활동이 없는 경우 VAT 납부의무가 없으며 해당현장에서 관할 FBIR에 자진신고

□ 정부별 분배

- 연방정부에서 징수하나 실질적으로 다음비율로 지방정부에 분배
-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 : 15%
- 주 정부 (State Government) : 50%
-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 35%

□ VAT 산정 사례

- 계산식
 - 자재 수입후 발주처 납품시VAT (Out VAT on Sales) : A (+)
 - 자재 수입통관시 기지불된VAT (Input VAT on Purchase) : B (-)
 - FBIR 실납부액 (Net VAT payable to FBIR) : A-B
- 문제점 :
 - Oil J/V(발주처)는 정부지침에 의해 외화기성분에 Contractor를 대행하여 VAT를납부하고 있으나(ExxonMobil 제외) 기성신청시 VAT 포함 요구를 불인정하고 있음.
 - 이경우, 관할 FBIR에서 VAT 납부증명을 발부받아 발주처로부터 VAT 납부분을 지급받아야 하나 현지법인 명이 아닌 한국본사명의로 발급된 외화기성을 세무당국이 불인정하고 있어 매번 시비의 소지가 되고 있음. (즉, Output VAT(+)가 없는 상황임)

□ 기타사항

LNG 프로젝트의 경우 국책사업으로 특별 면세공사에 해당되어 VAT가 전액 면세되고 있어 현지 공급업자(Local Supplier)들에게 VAT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반드시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는 부과, 공제해야 함.

6. 원천세(Federal Government Withholding Tax)

□ 개념

- 원천세는 해당업체의 법적 상태에 따라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세로 분류됨
- 해당기업이 유한회사 또는 무한회사의 경우 연방정부세에 해당하고
- 일반형태 (Individual, Associate Body, Enterprise, Partnership, Unlimited Company)의 경우 주정부세에 해당됨

□ 부과세율

- 연방정부 원천징수세(Federal Government Withholding Tax) :
 - 이자, 배당금, 임대료 (동산 및 부동산 임대 포함) : 10%
 - 커미션, 컨설팅, 기술 및 전문서비스 수수료 : 10%
 - 건설 및 공급자재 계약 : 5%
- 주정부 원천징수세(State Government Withholding Tax) :
 - 이자, 배당금, directors Fees : 10%
 - 커미션, 컨설팅, 운영·기술 및 전문서비스 수수료 : 5%
 - 건설 및 공급자재 계약 : 5%

□ 사례별 실례

- 현지법인 - Oil J/V(발주처)
 - 발주처(Oil J/V)는 현지법인 기성에 대해 5%의 연방정부 원천징수 부과, 공제후 FBIR에 납부. 현지법인 요청에 의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가능
- 현지법인 - 하청업체
 - 대부분 하청업체의 경우 5% 원천징수, 공제후 해당업체의 형태에 따라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에 납부
- 변호사 법률자문(Legal or Lawyer service), 공인회계사 감사비용 : 전문서비스>
 - 10% (연방정부), 5%(주정부)
- Project Appraisal 또는 Management : Consultancy에 해당
 - 10% (연방정부), 5%(주정부)
- 자재납품 및 건설시공: Contract of Supplies, Construction에 해당
 - 5% (연방정부, 주정부)
- 현지법인 - 통관사
 - 통관사의Agency Fee에 대해 10% (연방정부) 부과/공제
- 현지법인 - 인력공급업체(Someni등)
 - 해당사의Commission에 대해 10% 부과/공제
- 현지법인 - 외국업체
 - 해당 Service에 대해 계약통화에 대한 원천징수 부과/공제후 납부
- 현지법인 본사 - 외국업체 (실질 공사수행 업체)
 - 현지법인 본사를 대행하여 원천징수 부과/공제후 납부할 법적의무 없음

□ 납부방법 및 Penalty

- 원천징수 공제후 14일 이내 FBIR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지연시 지연 금액에 대한 10% Penalty 부과.
- 원천징수후 미납시 최대 200%의 Penalty가 부과됨. 지연납부 및 미납 공히 지연기간에 대한 실세금리(Prevailing Commercial rate)가 적용된 이자가 추가 부과됨.

7. 석유소득세

□ 기본개념

- 나이지리아에서 모든 석유에 대한 통제와 소유권은 연방정부에게 있음
- Petroleum Profits Tax ACT(PPTA,2004)에 의거 나이지리아에 있는 원유생산회사로부터 조세징수
- 원유생산회사는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석유제품판매회사와 석유생산 회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음

□ 절 차

- 과세기간 : 1. 1 ~ 12. 31
- 소득계산방법
 - 과세기간동안 판매된 판매이익, 과세기간동안 양도된 원유의 가치 등
- 공제대상 : 임차료, 사용료, 이자, 수선비, 우발채무, 연금 등

□ 세 율

- 조인트벤처회사의 수출품 : 85%
- 원유,갓, 국내판매분 : 65.75%
- 생산분배계약에 의한 심해유전 수출품 : 50%

8. 기타세목

□ 계약세(Transaction Tax)

- 개인 및 법인의 모든 계약 시 과세되며 세율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개 인	법 인
DIVIDEND, INTEREST&RENT	10%	10%
ROYALTIES	15%	15%
COMMISSION, CONSULTANCY	5%	10%
CONSTRUCTION	5%	5%
CONTRACT OF SUPPLIES	5%	5%
DIRECTOR'S FEES	10%	10%

자료원: The Chartered Institute of Taxation of Nigeria(2006)

□ 관 세

- 재화의 수입에 있어 면세의 2.5%~50%까지 다양하게 부과
- 수입품목에 대한 적용세율
 - ① 관 세 : CIF 금액 × 관세율
 - ② 부가세 : CIF 금액의 5%
 - ③ Port Surcharge : 관세의 &%
 - ④ CISS(Comprehensive Inport Supervision Scheme) : FOB 의 1%
 - ⑤ ECOWAS : 0.5%

□ 자본이득세

- 다음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처분에 대한 자본이득세(10%) 부과
 - ① 토지와 건축물 ② 옵션, 채권과 기타의 소유권
 - ③ 화폐의 처분 ④ 유동자산(차량포함)

- 재산세 : 지분과 주식을 제외한 기타 재산에 대해 10% 부과

- 교육세 : 모든 법인의 순익에 대해 2% 부과
- 인지세 : 사안별 인증 시 부과하며 금액은 미미함
- 기 타
 - Dividends and other Company Distributing: 주식배당에 따른 과세로서 세율은 10%
 - 나이지리아 정부는 재정적자 폭 축소를 위해 부가세 등의 과세 강화 및 국세청의 대기업체 및 개인에 대한 조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세원 확대를 위해 1999년 1월 1일부터 25%를 환급해주던 관세 환급금 제도를 폐지하고 담배 및 주류에 대한 이행관세를 부활시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음
 - 이와는 별도로 주요 산업부흥을 위해 세금우대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석유 및 가스 개발 관련 기업체에 대한 세금 우대조치 지속 추진
 - 외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추진을 통한 외국기업 투자 유치 강화
 - 천연가스 개발 사업자에 대한 세금 우대
 - 광물개발 사업자에 대한 세금 우대
 - 1999년 1월 1일 총 37개 품목 군에 대한 수입관세 상향 조정(3개 품목은 관세인하) 및 3개 품목에 대한 소비세 부활
 - 2004년부터 국내 제조 산업과 관련된 기계류, 플랜트,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 및 한시적 면세제도 시행

[남아프리카공화국]

1. 남아공 국세청(SARS, South Africa Revenue Service)

□ 국세청의 임무

- Revenue Collection(조세징수), Faciliate trade/customs(교역촉진)
- 실업보험료, 교육부담금의 징수도 담당
 - * 실업보험료 : 총급여액의 1%를 고용주와 사용인이 각각부담

□ 국세청 조직

- 국세청장(Commissioner) : Pravin Gordhan(2004년 취임, 5년임기)
- Executive Committee(국장급이상 14명으로 구성)에 의한 의사결정
- 총직원 14,013명(2007.3현재, 여성 65%, 흑인 63%)

□ 2006/2007 조세수입구조

(단위:Rm,%)

구분	합계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기타
세수	495,515	141,397	120,112	134,463	23,697	75,846
비율	100.0	28.5	24.2	27.4	4.8	15.1

* R 495,515m = 약 70조원(1\$=7R)

2. 조세제도 개황

□ 조세체계

- 조세의 종류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할 수 있음
 - 직접세는 소득세와 자본세로 구분되며 자본세는 자본의상속세 및 증여세이며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은 없음.

- 간접세는 일정한 거래에 부과되는 부가세(종전의 판매세가 '91.9 부터 부가세로 변경), 유류, 술, 담배, 기타물품에 부과하는 소비세, 기타 인지세, 통관세가 있음.
 - o 지방청부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기타판매세 등을 과세하지 않음
 - o 2001년부터 원천지국과세원칙에서 거주지국과세원칙으로 변경
 - o 소득세 신고·납부의무자는 납세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납세의무자로 등록해야함
- 조세의 종류
- 부가세(14%, 판매세가 부가세로 대체), 개인소득세(17.45%), 법인세(29%) * 외국업체 지사(34%), 인지세, 상속세(25%), 증여세(25%), 재산세 등
- 거주성 판단
- o 일반적기준 또는 물리적기준에 의해 판단
 - o 일반적기준
 - 남아공내에 개인의 일상적이거나 주요한 거소 또는 실제 주거지 존재, 법인설립이나 실질적관리장소 존재
 - * 실질적 관리장소 : 이사회개최장소, 중요한 관리통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관계없이 임원 또는 고위직원에 의해 일상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말함
 - o 물리적기준
 - 당해 과세기간 중 총 91일 이상거주
 - 직전 5년간 각각 91일 이상 거주하면서 총915일 이상 거주시에는 6년째연도에 91일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6년째에 거주자로 간주

□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비거주자

- 근로소득은 용역이 근로소득은 용역이 실제 이루어지는 국가, 즉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임.
- 단기간 자국에 체류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은 자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총급여액을 기초로 과세되며, 고용주가 자국에 소재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됨.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여부는 조세조약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조약의 일정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급여액은 자국에서 과세되지 않을 것이나 조약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됨.

□ 외교관으로서 근무하는 경우

- 외교관의 경우 외국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고유업무를 위해 자국에 거주면서 남아공의 일반적인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교관의 근로소득은 자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 상기 면세요건을 갖춘 외교관이 영주권을 획득하게 되면 면세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영주권 허가일부터 납세의무를 부여받게 됨
- 또한 외국정부가 자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고용인의 보수는 과세됨.

□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이중과세를 구제하기 위해 남아공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택하고 있음
-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동시에 납부세액은 환급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함.

□ 불복

-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반대의견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서면으로 반론을 제기해야 하고 반론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 반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원 또는 법원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불복 또한 반론 기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함.

3. 법인세

□ 과세대상 소득

- 남아공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 비자본적 지출과 손실발생액 등을 제외하고 산정
- 2001년 4월부터는 자본소득(Capital Gain)의 50%를 과세대상 법인 소득으로 포함
- Source based taxation에서 거주자기준으로 과세기준이 변경되면서 남아공에서 활동하는 모든 외국기업들이 국외에서 발생하는 이자, 임대, 로얄티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함
- 자산의 90%이상이 국외에 있는 외국인 소유회사는 남아공에서 세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음

□ 세율

- 광업 및 장기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회사의 과세소득에는 일률적으로 29%의 기본세금이 부과되고 법정 배당금에 대하여 12.5%(2007. 10. 1일부로 10%로 인하될 계획)의 2차 세금(secondary tax)이 부

과됨

- 단, 외국기업의 경우 34% 적용
- o 1996년 10월1일 이후 정부가 지정하는 주요산업, 지역, 노동력에 투자하는 제조업에 대해 최고 6년간 법인소득세 완전 면제
 - 단,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은 지역산업개발위원회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Board)의 승인을 득해야 함
- o 현재는 지방정부의 소득세는 없으나 향후 9개 지방정부가 수입증대를 위해 과세 예상
 - 지방에 따라 총매출액과 종업원 급여총액의 0.1% - 0.34%에 해당하는 세금을 Regional Services Councils에 납부해야 하며 지방자치세는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가치에 따라 납부해야 함

□ 법인 배당금에 대한 세율

- o 법인 배당금에 대한 배당세(Secondary Tax on Companies)의 세율은 12.5%에서, 2007. 10. 1일부로 10%로 인하됨
- o 남아공 정부는 보다 많은 법인 이익금이 기술연구 및 설비증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배당세를 부과

[남아공 법인세 구조]

Type	Rate of Tax
Companies	29%
Small business corporations	
R0 – R43 000	0%
R43 001 – R300 000	10%
R300 001 and above	29%
Employment companies	34%
Foreign resident companies which earn income from a source in South Africa	34%
Secondary tax on companies (STC) on dividends declared after being reduced by dividends receivable during a dividend cycle (South African branches of foreign resident companies are exempt from STC)	12,5% (10% from 1 October 2007)

□ 절 차

- 회계연도 전, 후반기 중 각각 1회씩 추정법인세를 사전납부해야 하며 실제소득에 근거하여 최종 산정된 법인세를 다음 회계연도 전반기 중 납부해야 함
- 신고기한은 매년 국세청이 공시하는데 대부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8월 사이임
- 세금납부는 국영은행인 ABSA(nedbank and standard bank)를 통해 이루어짐 (관련 홈페이지 www.commerce.sars.gov.za.)a
- 조세목적상 회사는 주식회사와 합자회사로 구분
 - 회사법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최소한 40% 이상(요한네스버그 증권 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50%)의 지분을 일반인이 소유해야 함
 - 주식회사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반면 합자회사는 면제되지 않음
 - 금광회사의 경우 총 판매액에 대한 소득발생분에 대하여 특별소득세 및 임차료가 부과됨
- 감가상각
 - 정액법 적용
 - 기간 및 요율
 - * 플랜트, 기계류 5년 (20%), 빌딩 및 빌딩개조물 20년(5%)
- 마모공제
 - 비생산 플랜트나 기계, 사무실장비, 가구 및 차량에 적용하며 체감상각법을 적용
 - 사무실장비 및 가구: 10%, 차량 : 20%
- 리스 수수료
 - 리스물품의 이용 댓가로 지불되는 리스수수료는 사용권이 허가된 기간동안이나 25년동안 상각됨

- 대상 : 토지, 건물, 플랜트, 기계, 특허권, 상표, 및 유사한 자산
- 외국회사지점
 -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소득발생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 단 외국계 금광의 경우 특별소비세 및 사전협약에 따른 임차료를 부과
- **국외특수관계법인**
 - 국외특수관계법인은 1인 이상의 거주자가 직간접적으로 50%이상의 지분 또는 의결권을 보유하는 법인을 뜻함
 - 외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 판정되면, 거주자의 지분율만큼 법인의 이익이 당해 거주자에게 포함되므로 실질적으로 국외 법인의 이익에 대해 거주자에게 과세하는 효과를 냄
- **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기업에는 두가지 중요한 특례규정이 적용되고 요건을 아래와 같음
 - 모든 주주는 자연인일 것
 - 주주는 타 법인 지분을 보유하지 않을 것
 - 법인소득은 14백만 이하일 것
 - 투자 및 개인용역이 매출 및 이익의 20%이하여야 함.
 - 요건 충족시에는 0%~29%의 누진세율 적용과 모든 중고 기계장치에 대한 즉시상각이 허용됨.
- **특별 손금산입 항목**
 - 공업용 건물은 매년 5%, 항공기 및 선박은 매년 20%, 석유파이프라인은 매년 10% 등 자산별로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률이 정해져 있다.

□ 보험업 법인

- 단기보험업 법인에는 일반규정이 적용되나, 장기보험업 법인에는 신탁관련 등 타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세율도 9%~30%로 각각 다르게 적용됨

□ 광업 법인

- 광업 영위 법인에는 과세소득에서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는 것이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됨
- 자본적 지출으로는 갱도 침식, 광업 장비에 대한 지출 및 채굴전·채굴 중지 기간동안의 발생비용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농업

- 농업은 축산업, 곡물경작, 유제품생산, 농장경영, 사탕수수 재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 농업을 영위하는 자는 과세기간 기초·기말의 가축 및 경작물 가치를 평가하여 신고해야 함
- 농업 법인에게는 농작물 개선 등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에 대한 비용공제가 허용되고 농업소득은 해마다 변동이 심한 관계로, 당해연도와 직전 4개연도 소득의 평균액을 기초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특례제도가 허용됨.

□ 사업개시전 비용과 손실의 공제

- 사업개시전 발생 비용은 공제 가능하고 사업개시전 비용에는 광고, 마케팅, 보험료, 회계·법률 자문료, 임차료, 시장조사비 등이 포함되며, 자본적 지출은 제외됨
- 단, 이러한 비용은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함

4. 개인소득세

□ 기본개념

- 상위직의 소득세는 국제수준보다 높은편이며, 세율적용에 있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차이는 거의 없으나, 이중과세방지협정 대상국의 비거주자가 183일 이내 거주할 시에는 감액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음
- 과세대상 소득은 연간 총 소득에서 공제대상 소득을 차감한 액수이며, 총고용 소득에는 보너스, 수당, 고용주의 세금대납분 등이 포함됨

□ 세 율

- 최저 세율은 18%이며, 최고 세율은 40%
- 과세대상 소득이 R112,500인 경우에는 18%의 세율이 부과되며, 과세대상 소득이 R450,001인 소득자에게는 40%의 세율이 부과
- 다만, 65세 이하의 소득자 중 과세대상 소득이 R43,000, 65세 이상 소득자 중 과세대상 소득이 R69,000 미만인 자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됨.

[남아공 개인소득세 구조]

Taxable Income (R)	Rates of Tax (R)
0 - 112 500	18% of each R1
112 501 - 180 000	20 250 + 25% of the amount above 112 500
180 001 - 250 000	37 125 + 30% of the amount above 180 000
250 001 - 350 000	58 125 + 35% of the amount above 250 000
350 001 - 450 000	93 125 + 38% of the amount above 350 000
450 001 and above	131 125 + 40% of the amount above 450 000

주 : 2007/2008 회계연도 기준, 자료원 : 남아공 국세청

□ 공제대상 소득

- 2,000 Rand 이하의 이자소득, 일정한도까지의 우편저축이나 주택 건설조합
- 저축, 퇴직시 1,800 Rand까지의 각종 연금 등이 포함됨. 또한 최고 면세 투자 한도액은 230,000 Rand 임
- 의료비 및 과세대상 소득의 5%를 초과하는 의료혜택기금(medical benefit funds) 납입금
- 연금기금(pension fund) 납입금 (근로소득의 7.5%까지)
- 퇴직연금기금(retirement annuity fund) 납입금(3,500 Rand와 불로소득 및 비연금 소득의 15%까지)
- 지방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금(500 Rand 또는 과세대상소득의 2%까지)
- 업무상 손실(증빙서류 첨부 요)
- 업무상 접대비(수당) (2,500 Rand까지)
- 업무상 출장 및 교통수당

□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 근로소득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① 급여, 초과근무수당, 보너스 등 현금성 급여액 ② 출장비 등의 수당 ③ 승용차, 주택 제공 등의 비현금성 대가임
- 표준 근로소득세(SITE)
 - 표준근로소득세는 연간 순급여액이 60,000랜드(Rand)을 초과하지 않거나 출장비를 수령하지 않는 개인에게 적용되고 이러한 경우는 완납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타 소득이 있거나 공제를 신청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진다.

- 그러나, 과세당국이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단순하게 이를 무시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신고를 해야함.
- 다음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세액 재계산을 요청할 수 있다.
 - 의료비가 과세소득의 7.5%를 초과
 - 장애자에 대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
 - 65세 이상 근로자의 의료비가 있는 경우
 - 퇴직연금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
- 원천징수
 - 고용주는 매달 근로자의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되는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다음달 7일까지 정부에 납부해야 함
 - 연간 순급여액이 60,000랜드를 초과하는 근로자는 소득세 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 타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60,000랜드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를 해야 함.
- 공제항목
 - 소득에서 공제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비용 및 손실
 - 실제 발생하여야 함
 - 사업연도 기간 내에 발생
 -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발생
 - 자본적 지출은 해당하지 않음
 - 영업과 관련된 목적에서 지출
 - 근로자와 임대업자는 연금 및 퇴직연금납입금에 대한 공제가 가능
 - 지정단체에 대한 기부금 : 지정된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기부금과

의료비를 공제하기 전 과세소득의 5%를 한도로 공제가능하다

- 의료비 :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에 대한 의료비 공제가능
 - 감가상각비 : 비상각자산인 경우를 제외한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허용된다. 개별항목의 가액이 5,000랜드 이하인 경우에는 당기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 보험료 : 보험료는 그 대상이 대손, 질병, 사고, 장애, 실업 및 그 외 정책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다.
-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항목(개인적 지출)
- 납세자 본인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발생한 비용 및 사업상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의 주택 임차, 수선, 유지 비용은 공제되지 않음
 - 단, 주택관련 지출이라 하더라도 주택의 일부가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비현금성 항목에 대한 과세
- 고용과 관련하여 수령한 모든 대가는 총소득금액에 포함되나 일부 항목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대가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수당 : 일반적으로 수당은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항목으로, 사업상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고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수당에는 출장비, 유지비, 유니폼 제공 등이 있음.
 - 출장비 :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되나 업무상 여비교통비는 제외된다. 출퇴근보조금은 개인적 지출로 간주하여 과세되며, 여비교통비는 국세청이 고시한 세액표(거리에 비례하여 비용을 인정)에 의하거나 실제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유지비 : 일반적으로 유지비는 근로자가 주소지를 떠나 근무하는 경우 주거비와 식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일수에 따라 인정되는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에 포함됨.
- 유니폼 : 유니폼에 대한 대가는 총소득금액에 포함되나, 근로자가 특정 유니폼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요구받거나 유니폼이 일반적인 의상이 아닌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액에서 면제된다.

○ 비현금성 대가

다음의 비현금성 대가는 소득금액에 포함된다.

- 사택 제공 : 사택의 무상, 저가 사용 대가로서 주거용과 휴양용을 모두 포함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과세되는데, 고용주가 사업상 주소지를 떠나 있는 동안 근로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 승용차 제공 : 개인적인 목적으로 승용차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달 평가액의 2.5%가 소득금액에 포함됨.
- 저율, 무상 대출 : 공시된 이율(07.3월 이후는 10% 적용)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된 경우, 이자 차액분이 과세됨.

○ 연금

- 조세조약에 따르면 연금소득은 정부연금을 제외하고는 거주지국에서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연금의 종류에 따라 과면세를 구분하고 있다.
- 전쟁참전자, 광업 종사 중 상해자, 장애자, 국외에서 지급되는 연금소득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절 차

- 등록된 납세자는 매년 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해야하고 개인과 신탁의 경우 과세기간은 매년 3.1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임
- 신고기한은 매년 국세청이 지정하고 06/07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10.31까지, 07/08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8.29까지임
- * 관할세무서에 신고기한연장 신청가능
- 고용주는 근로자의 임금 및 각종 부가급여에서 원천과세나 표준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공제 할 수 있으며 과세연도가 지난 후 바로 최종 소득세를신고해야 함.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과세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과세통지를 발행함
- 고소득자는 원천과세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잠정적 납세자(provisional tax payer)로 분류되어 과세연도중 6개월 간격으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과세연도에서 6개월후 최종 납부

5. 자본이익세

□ 개 념

- 자본이익세는 2001.10.1.부터 시행된 제도임
- 자본이익은 자산의 처분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 발생하며, 자본이익세는 납세자가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만 발생함
- 자본이익세는 납세자의 과세소득의 한 부분을 구성하며, 처분연도에 타소득의 세무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 세 율

- 개 인 : 순자본이익에서 매년 12,500랜드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
- 법인 : 자본이익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율인 29%로 과세

□ 자산의 처분

- 자산의 처분은 매매, 증여, 교환, 사망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 적용 배제

- 사업용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대부분의 개인적 자산
- 퇴직에 따른 수혜물품
- 당초의 보험수급자가 장기보험에 의해 취득한 자산
- 사망의 경우 60,000랜드까지 면세

□ 비거주자의 자국내 자산 처분

- 비거주자가 다음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자본이득세를 검토해야 함.
 - 자국 내에 위치한 부동산 및 그에 관련된 이자와 권리
 - 자국 내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자산

6. 기타조세

□ 원천세

- 로 열 티
 - 남아공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가 대상으로 과세율은 로열티 총액의 12%
- 배 당 금
 - 신고된 배당금의 순총액에 대한 12.5%의 2차 세금이후 과세되는 비거주 주주의 배당에 대한 15%의 원천과세는 1995년 10월 1일 폐지, 국외거주자의 주식보유세도 1995년 1월 폐지되었음
- 이 윤 : 법인세 납부후 송금분은 원천과세 대상에서 제외
- 외국연예인, 운동가 : 15%

- 비거주에게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 비거주자가 개인일 경우 : 5%, 회사일 경우 : 7.5%, 신탁 : 10%
 - 이자소득
 - 1992년 6월부터 외국자본의 유출을 막기위해 외국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임
 - 임금에 대한 원천징수(PAYE : Pay-as you-earn)
 - 과세가 원천징수된 달의 말일부터 7일 이내에 납부
 - 비거주주식세는 배당금을 지불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로얄티에 대한 원천징수는 로얄티 지급의무가 발생한 달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불해야 함.
- 부가가치세
- 지난 1994. 4. 1일 부로 14%로 조정되었으며, 생산과 분배의 모든 단계 뿐만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 공급 단계에서 부과
 - 1996. 10. 1일부터는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금융서비스에도 부과되고 있음
- 10%의부동산 이전에 따른 세금
- 1%의 증권매매세 및 인지세 등
- 자산세
- 지방자치단체와 여타 지역당국은 토지나 건물의 과세가치에 기준하여 소유자에게 세금(부동산세)을 부과하며 미개발된 토지나 건물을 포함한 모든 자산에 부과됨
- 양도세
- 부동산 자산의 거래는 내국세 세입청이 관리하는 양도세의 대상임

- 자연인의 양도는 50,000R을 초과하는 가치에 대하여 최고 8%, 회사나 신탁에의 양도는 10%의세율 적용
- 양도세율
 - 회사 : 10%
 - 자연인
 - * 50,000란드~ 60,000란드 까지 1%
 - * 60,000란드~250,000란드 까지 5%
 - * 250,000란드 이상 8%

□ 투자소득 관련 과세

- 배 당
 - 남아공 거주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은 수령자의 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비과세됨.
 - 외국법인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일반적으로 과세되며, 아래의 항목은 예외적으로 과세되지 않는 부분임.
 - 총지분의 10%이상을 거주자가 보유하였음을 외국법인이 확인하는 경우
 - 의결권 있는 지분의 20%이상을 거주자가 보유하는 경우 등
- 이 자
 - 비거주자가 국내에 원천이 있는 이자를 수령한 경우에도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음
 - 이자 총액에 대해서 면세가 적용되는데, 요건은 아래와 같음.
 - 자연인의 경우 : 개인이 과세기간 중 총183일 이상 자국내에 체류하거나, 자국 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때
 - 그 외의 경우 : 과세기간 중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때
 -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과세되나 나이와 금액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며, 국외원천 이자배당은 일정부분까지로 면세점이 더 낮아짐.



V. 노무관리

[나이지리아]

1. 임금
2. 노동 조건
3. 사회보장제도

[남아프리카공화국]

1. 노동조건
2. 임금수준

V. 노무관리

[나이지리아]

1. 임금

□ 임금 수준

-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으로 50명 이상의 근로를 채용하는 기업을 기준으로 월평균 최저임금을 7,500나이라로 보장하고 있음
- 사무직의 경우 평균 400~700달러 수준이며, 노동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구성이 보장됨

□ 퇴직금

- 퇴직금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으며 관례상 근속연수 1년에 월급어의 100%를 지급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님

2. 노동 조건

□ 노동시간

- 법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통상 1일 9시간, 주 45시간임
- 초과근로수당은 고용주와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관례임

□ 휴 가

- 노동법에는 최소 휴가기간에 대해 명시된 것은 없으며, 보통 근무일수로 12일을 관례상 주고 있음
- 고용주와의 계약에 따라 휴가일수를 협상할 수 있으며 무급 또는 유급 휴가를 결정할 수 있음

3. 사회보장제도

- 나이지리아는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제도가 전무함
- 개별 보험회사를 통해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현지 진출 지상사의 경우 International SOS를 통해 사고발생 시 남아프리카공화국 또는 가까운 유럽으로 긴급 후송할 수 있는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음

[남아프리카공화국]

1. 노동조건

□ 근무시간 : 주당 45시간 이하

- 남아공 노동조건법(The Basic Conditions of Employment Act)에 따르면, 노동자의 근무시간은 일주일에 4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5일 근로자는 하루 9시간, 주 6일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초과근무

- 계약서상 초과근무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하루에 12시간 이상 초과 근무는 금지되어 있음.
- 초과 근무를 한 고용인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근무수당의 1.5배를 지급하거나, 초과 근무시간만큼 단축 근무하도록 해야함.

□ 휴 가

- 근로자는 1년에 연속 21일(근무일 기준 15일)의 정기휴가로 신청 가능
 - 이 외에 병가는 3년에 6주이며, 가족 경조사에 사용할 수 있는 가족 의무휴가 1년에 3일, 출산휴가는 최소 4개월임.
 - 하루 병가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 없으나, 이를 연속 병가는 진단서 필요

□ 퇴직금

- 계약기간 종료, 고용인의 사표, 해고 시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나, 구조조정 차원에서 고용인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지급해야 함.
- 퇴직금은 노동자의 근무연수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산하여 1년당 최

소 일주일치의 급여를 지급해야 함.

□ 해 고

- 남아공 정부는 25.6%에 이르는 높은 실업률 해소 및 노동 안정성 차원에서 노동자 해고조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 노동자 해고가 상당히 어려움.
- 남아공 근로조건법에 따르면,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는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노동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함.
 - 노동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 1주일
 - 노동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2주일
 - 노동자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4주일
- 정해진 계약기간을 갖고 있는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 한달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함.

□ 노동 분쟁

- 노동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우선 CCMA(Commission for Concili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또는 Bargaining Council을 통해 화해과정을 거쳐야 함.
 - 노사간 화해를 위해 우선 30일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Council이나 CCMA의 중재에 회부됨.
 - 중재는 재판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가 출두할 수 있고 증인이나 증거자료 제출 가능
 - 중재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원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중재 결정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에 판결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됨.

2. 임금수준

(단위 : Rand)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광산업	6,513	7,233	7,502
제조업	6,388	7,054	6,959
전력/수자원	14,768	15,041	14,984
건설업	4,279	4,640	4,926
도소매	5,034	5,132	5,114
통신/운송	10,180	11,095	11,301
금융/부동산	6,724	7,962	8,398
개인서비스업	8,681	8,686	9,084
전체 평균	6,887	7,412	7,600



Ⅵ. 주요 기관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VI. 주요 기관

[나이지리아]

□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관

- 주 소 : 용산구 동빙고2동 310-19
- 전 화 : 02-797-2370, 팩 스 : 02-796-1848

□ 주 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

- 주 소 : No.9 Ovia Crescent Off Pope John Paul II Street
Maitama Abuja
- 전 화 : (234-9) 461-2701, 팩 스 : (234-9) 461-2702

□ 주 나이지리아 KOTRA 무역관

- 전 화 : (234-1) 261-4294, 팩 스 : (234-1) 261-1519

□ 나이지리아 국세청(Federal Inland Revenue Service)

- 주 소 : Ministry of Finance Complex, Block B, 2nd Floor
Gadasral Zone A3, Garki, Abuja
- 전 화 : (234-9) 234-0939, 263-5446
- 팩 스 : (234-9)263-5446
- 홈페이지 : www.firs.gov.ng

□ NIPC(Nigeria Investment Promotion Commission)(투자진흥위)

〈Head Office〉

- 주 소 : Plot 1181 Aguiyi Ironsi Street Maitama District
P.M.B. 381 Garki Abuja, Nigeria.

- 전 화: (234-9) 413-4380/1403/4112/0582
- 팩 스: (234-9) 413-4112
- 이 메 일: info@nipc-nigeria.org, infodesk@nipc-nigeria.org
nipc@nipc-nigeria.org

〈North-east Zonal Office, Maiduguri〉

- 주 소: No. 1 Bosco Line, Kirikasama Area (Opp. State Secretariat) Maiduguri, Borno State
- 전 화: (234-76) 235504

〈North-west Zonal Office, Maiduguri〉

- 주 소: 3rd Floor, African Alliance Building, No. 1F Sani Abatcha Way Bompai-Kano
- 전 화: (234-64)641312
- 팩 스: (234-64) 64628

〈North-central Zonal Office, Jos〉

- 주 소: No. 60 Murtala Muhammed Way, Tere House, Opp. Strabud Bus Stop
- 전 화: (234-73) 458488
- 팩 스: (234-73) 458487

〈South-east Zonal Office, Enugu〉

- 주 소: NCFC Building, No. 5 Onitsha Road, Enugu
- 전 화: (234-42) 255079
- 팩 스: (234-42) 255506

〈South-west Zonal Office, Enugu〉

- 주 소: Former Nigerian Tobacco Company(NTC) Building Leaf Road, Iyaganku, Ibadan

□ Securities & Exchange Commission(증권거래위원회)

〈Head Office〉

- 주 소: TOWER 421 Constitution Avenue Central Business District, P.M.B. 315 Garki -Abuja.
- 전 화: (234-9) 2346272 ~ 5
- 팩 스: (234-9) 2346276
- 이 메 일: sec@sec.gov.ng

〈Lagos Office〉

- 주 소: UBA Building (3rd Fl.) 57, Marina, P.M.B. 12638 Marina-Lagos
- 전 화: (234-1) 2661552, 2663210
- 팩 스: (234-1) 2644538, 2644541
- 텔레텍스: 23623 SEC.NG.
- 이 메 일: seclzo@sec.gov.ng

〈Kano Office〉

- 주 소: African Alliance House (4th Floor), F1, Sani Abacha Way/Airport Road, Opposite KLM Airlines, Kano.
- 전 화: (234-64) 314105, 312606
- 이 메 일: seckzo@sec.gov.ng

〈Port Harcourt〉

- 주 소: First Bank Building, 22/24 Aba/Port Harcourt Road, Port Harcourt
- 전 화: (234-84) 575939, 575940
- 이 메 일: secphzo@sec.gov.ng

- Oil & Gas Sector: Department of Petroleum Resources(DPR, 에너지 자원부)
 - 주 소: Plot 622, Eket Close Area 8, Garki, P.M.B. 399
 - 전 화: (234-9) 2349982, 2349988

- Food & Drug Manufacture (식약품부)
 - National Agency for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Control (NAFDAC) Food and Drug Manufacturing
 - 주 소: Moshod Abiola Road, Area 2 P.M.B. 5023 Garki, Abuja
 - 전 화: (234-9) 2346383, 2346405, 2346402
 - 홈페이지: www.nafdacnigeria

- Manufacturing : Standards Organisation of Nigeria (SON, 제조부)
 - 주 소: 13/14, Victoria Arobieke Street Off Admiral Way Northern Business District Lekki Peninsula, Lagos
 - 전 화: (234-9) 2708231~4

- Telecommunication : Nigerian Communication Commission(통신부)
 - 주 소: Plot 72, Ahmadu Bello Way, Central Business District, Benue Plaza Abuja, Federal Capital Territory
 - 전 화: (234-9) 2340330
 - 팩 스: (234-9) 2344589
 - 홈페이지: www.ncc.gov.ng

- Agriculture: Federal Ministry of Agriculture(농업부)
 - 주 소: FCT Secretariat, Area 11, Garki, Abuja
 - 전 화: (234-9) 2341931, 2342331, 2341458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ertification (for all Industries) Ministry of Environment Manufacturing (환경부)
 - 주 소: Federal Secretariat Complex (7&9 Floor) Shehu Shagari Way, Maitama P.M.B. 468, Garki, Abuja
 - 전 화: (234-9) 523431, 5234932, 5234932

- Solid Minerals: Ministry of Solid Minerals Development(광물부)
 - 주 소: Federal Secretariat Complex, Shehu Shagari Way, Maitama P.M.B 107, Garki Abuja
 - 전 화: (234-9) 5235830, 5236517

- Power & Steel: Ministry of Power and Steel(철강부)
 - 주 소: Federal Secretariat Complex,, Shehu Shagari Way, Maitama P.M.B. 278, Garki, Abuja
 - 전 화: (234-9) 5237064~6

[남아프리카공화국]

□ 주한남아공 대사관

- 주 소 : 용산구 한남동 1-37(140-884)
- 전 화 : 02-792-4855, 팩 스 : 02-792-4856
- 이 메 일 : general@southafrica-embassy.or.kr

□ 주 남아공 한국대사관

-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보츠와나, 수와질랜드 겸임대사관
- 주 소 : Greenpark Estates #3, 27 George Storrar Drive
Greenloof Pretoria 0181, South Africa
- 전 화 : + 27-12 460-2508 팩 tm : +27-12 460-1158

□ 남아공 국세청

- 홈페이지 : www.sars.gov.za

□ 남아공 회사등록청

- 주 소 : Zanza Building, 116 Proes Street Pretoria, South Africa
- 전 화 : + 27-12 310-8743 팩 스 : + 27-12 328-3051
- 홈페이지 : www.cipro.co.za

□ 국가 투자유치 기관

- 기관명 : Trade Investment South Africa(투자부)
 - 주 소 : 77 Meintjies Street, Sunnyside, Pertoria, 002,
South Africa
 - 전 화 : + 27 12 394 9500
 - 이 메 일 : investmentsa@thedti.gov.za
 - 홈페이지 : www.thedti.gov.za

□ 주정부 투자유치 기관 정보

- Gauteng州 : Gauteng Economic Development Agency(GEDA)
 - 주 소 : 56 Main Street, Johannesburg
 - 전 화 : +27 11 833 8750
 - 이 메 일 : info@geda.co.za
 - 홈페이지 : www.geda.co.za
- Mpumalanga州 : Mpumalanga Economic Growth Agency(MEGA)
 - 주 소 : 22 Van Rensburg Street, Nelspruit 1200
 - 전 화 : +27 13 752 2440
 - 이 메 일 : trade-investment@mega.co.za
 - 홈페이지 : www.mega.co.za
- Kwazulu-Natal州 : Trade and Investment Kwa zulu Natal
(TIKZN)
 - 주 소 : 3rd Floor The Marine, 22 Gardiner Street, Durban
 - 전 화 : +27 31 366 0600
 - 이 메 일 : tok@tikzn.co.za
 - 홈페이지 : www.tikzn.co.za
- Eastern Cape州 : Eastern Cape Development Corporation(ECDC)
 - 주 소 : Ocean Terrace Park, Moore Street, Quigney, East London
 - 전 화 : +27 43 704 5600
 - 이 메 일 : info@ecdc.co.za
 - 홈페이지 : www.ecdc.co.za
- Western Cape州 : Western Cape Investment and Trade
Promotion Agency(Wesgro)
 - 주 소 : Waldorf Arcade, 12th Floor, 80 St Georges Mall
Cape Town

- 전 화 : +27 21 487 8600
- 이 메 일 : info@wesgro.org.za
- 홈페이지 : www.wesgro.org.za

○ Free State州 : Fre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 주 소 : 111 Zastron Street, Bloemfontein, 9300
- 전 화 : +27 51 400 0800
- 이 메 일 : fdccorp@fdc.co.za
- 홈페이지 : www.fdc.co.za

○ Northern Cape州 :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and Tourism

- 주 소 : 13th Floor Post Office Building, Market Square, Kimberley
- 전 화 : +27 53 839 4002
- 홈페이지 : www.nothern-cape.co.za

○ North West州 : Invest North West

- 주 소 : 171 Wolmarans Street, 1st Floor Old Mutual Building, Rustenburg
- 전 화 : +27 14 594 2570
- 홈페이지 : www.investmentnotrhwest.co.za

○ Limpopo州 : Trade and Investment Limpopo

- 주 소 : 130 A Marshall Street, Polokwane
- 전 화 : +27 15 295 5171
- 홈페이지 : www.til.co.za

□ Industrial Development Zone(IDZ) 정보

○ East London IDZ

- 전 화 : 27 43 702 8200
- 팩 스 : 27 43 736 6405
- 홈페이지 : www.elidz.co.za

○ Coega IDZ

- 전 화 : 27 41 408 4800
- 팩 스 : 27 41 408 4998
- 홈페이지 : www.coega.co.za

○ Richards Bay IDZ

- 전 화 : 27 35 789 3400
- 팩 스 : 27 35 789 1668
- 홈페이지 : www.tikzn.co.za

○ Richards Bay IDZ

- 전 화 : 27 35 789 3400
- 팩 스 : 27 35 789 1668
- 홈페이지 : www.richardsbayidz.co.za

○ JIA(OR Thambo International Airport) IDZ

- 전 화 : 27 11 689 1600
- 팩 스 : 27 11 689 1601
- 홈페이지 : www.blueiq.co.za



Ⅶ. 참고사항

1. 투자관련 참고
2. 남아공과의 FTA 관련자료
3. 대한전선 남아프리카공화국 광케이블 입찰 성공사례

VII. 참고사항

1. 투자관련 참고

□ 아프리카 역내 시장통합체

명 칭	출 범	회 원 국	성 격
AMU (Arab MaghrebUnion)	1989년	알제리, 리비아, 모로코, 튀지니 등 5개국	상품 및 서비스 생산요 소의 자유무역
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1994년	이집트, 앙골라, 콩고, 케 냐, 수단, 우간다, 마다가 스카르 등 20개국	무역장벽 제거를 통한 교역증진 역외단일공동관세 적용
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1975년	나이지리아, 가나, 세네 갈, 토고, 베냉, 부르키나 파소 등 15개국	경제, 사회, 문화협력증진 경제 및 정치협력강화
SADC (Southern Africa Development Community)	1992년	남아공, 앙골라, 보츠와 나, 콩고, 모리셔스, 모잠 비크 등 14개국	지역안보강화 무역장벽 완화를 통한 시장통합
SACU (Southern Africa Customs Union)	1969년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등 5개국	공동관세 pool 적용 역외단일공동관세 적용

□ 아프리카 거점국가별 건설플랜트 발주특성

국 가	발 주 특 성
나이지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유전, 가스전 개발 관련 플랜트 발주 붐 - 해양설비 개보수 및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발주확대 - 오일메이저(현지법인)에 의한 플랜트 발주시장형성 - 대규모의 고부가가치 가스처리플랜트 발주확대 - 전력플랜트 발주물량 급증(2007년 경우 발전소 증설에 132억달러의 예산배정) - 자원개발과 발전소 건설을 연계시키는 정책구사
남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플랜트 건설에 대한 수요급증 - 전력난 해소를 위한 신규발전소 건설이 이어지고 있으나 급증하고 있는 수요를 따라 잡기에는 부족 - 2010 월드컵개최 및 경제호황에 따른 건설붐으로 전력수요 급증
이집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의 석유화학플랜트 시장형성 - 2022년까지 100억달러를 투입하는 석유화학시설확충 마스터 플랜에 따라 대규모의 발주가 이어지고 있음 - 알제리와 함께 석유 및 가스를 유럽과 중동으로 수출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한·아프리카 협력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한·아프리카 포럼」 (외교통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포럼개최(서울, 200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5개국 정상과 27명의 각료급인사 참석 - [서울선언]채택 (포럼의 정례화 선언) ▲ 제2차 포럼(남아공, 200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아공, 마다가스카르, 케냐 등 정부 및 학자참석
「공동위원회」 (외교통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8개국과 공동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위'라는 큰 명칭 아래 현안에 따라 '경제·건설·정책공동위'가 개최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컨퍼런스(KOAFEC)」 (재경부/수출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장관급 컨퍼런스 개최 및 후속 성명서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15개국 경제장관참석 (서울, 2006.4) - KOAFEC의 격년 정례화 - KOAFEC 자문단(Consultative Group) 구성 - 4대중점 협력분야에 대한 Action Plan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인프라건설②IT협력③경제개발경험전수④인력개발 ▲ KOAFEC 자문단발족(튀니지 AfDB본부, 2006.12) ▲ KOAFEC Action Plan 발표 (2007.5) ▲ 권역별 현지 Work Shop(한국개발경험전수) 개최
「한·아프리카협회 (KOAF)」 (소수의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기업(중소기업)차원에서 상호교류 및 세미나 ▲ 국내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유도해내기에는 역부족
「한·남아공경제 협력위원회」 (무역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남아공 간의 경제교류 목적 ▲ 경제인합동회의 및 비즈니스 상담회의 개최 ▲ 1차회의(남아공, 2006.10), 2차회의(서울, 2007.5)
「한·이집트 경제협력위원회」 (전경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절단 교류 및 정보교환 목적으로 2001년발족 ▲ 파트너는 이집트기업인협회로 매년 회의개최 * 현재까지 6회 개최
「한·나이지리아 비즈니스포럼」 (대한상공회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기업간 기업정보 공유 및 활동지원 ▲ 2006.3월 나이지리아에서 양국 기업인 130명이 참여한 비즈니스 포럼개최

2. 남아공과의 FTA 관련자료

□ 신흥시장으로서의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비교평가

구 분		부패지수	경제자유도	성장경쟁력 지수	비즈니스 용이성
남아프리카공화국		30.1(1위)	32.7(1위)	35.9(1위)	18.1(1위)
BRICs	중국	48.6	71.7	41.9	58.7
	브라질	40.6	50.9	55.6	76.8
	러시아	61.6	76.7	64.1	51.0
	인도	61.6	77.4	42.7	74.8
NEXT-11	방글라데시	-	89.9	94.0	41.9
	이집트	52.7	81.8	45.3	91.0
	인도네시아	91.1	86.2	63.2	74.2
	이란	59.6	99.4	-	69.7
	멕시코	43.8	39.0	47.0	47.1
	나이지리아	98.6	93.1	75.2	60.6
	파키스탄	-	70.4	70.9	38.7
	필리핀	69.9	62.9	65.8	72.9
	터키	52.7	54.7	56.4	60.0
	베트남	69.9	90.6	69.2	63.9

주: 숫자는 각 지표의 순위를 백분율로 표시하여 낮을 수록 양호함
 자료 : Transparency International(2004,2005), Heritage Foundation(2005)
 World Bank(2006)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규모 비교(2005년)

구 분	단위	남아공	한국	인도	말레이	멕시코	칠레	브라질
GDP	1억\$	2,395	7,875	8,003	1,306	7,684	1,152	7,961
수 출	1억\$	517	2,844	952	1,409	1,891	406	1,183
수 입	1억\$	623	2,612	1,346	1,144	2,066	326	776
1인당 GDP	달러	5,050	16,306	725	5,152	7,180	7,073	4,271
인 구	만명	4,743	4,829	110,337	2,535	10,703	1,630	18,641

자료 : 통계청(2006)

□ FTA 평가기준

① 경제적기준

남아공은 아프리카 전체 경제규모의 25%, 사하라 이남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절반 가까이에 달하며 1인당 국민소득도 구매력 기준으로 1만달러를 상회하고 있음

아프리카 총교역의 1/4정도를 차지하며 아프리카 대외교역을 사실상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아프리카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40~50% 정도를 끌어들이고 있음

BRICs 등 신흥경제국에 비해서는 소국이지만 말레이시아, 칠레 등에 비해서는 경제력이 앞서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첫 번째 FTA 체결국인 칠레에 비해서는 경제규모 및 교역 모두에서 앞서고 있다

② 거점지역으로서 활용성

남아공은 SACU, SADC 등과 같은 아프리카 역내통합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가고 있어 이들 지역의 진출을 위한 거점시장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

EU는 지난 2000년 남아공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역시 SACU와의 FTA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특히,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 AGOA(아프리카 성장기회법)라는 무역제도를 통해 무관세·무쿼터 특혜를 광범위하게 부여하고 있는데 남아공의 경우 2004년 대미 총 수출가운데 30%에 해당하는 17억달러가 AGOA 특혜로 수출됨

③ 정치, 외교적 기준

남아공은 아프리카의 정치적 리더로서 아프리카 통합을 선도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새질서 모색’이라는 기치하에 아프리카 대륙을 하나로 통합하다는 아프리카연합(AU)을 주도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아프리카의 빈곤퇴치와 상호협력을 목표로 하는 NEPAD(아프리카 신경제 파트너십)을 선도하고 있음

- . 콩고(DR), 브룬디, 수단 다르푸르(Darfur), 코트디브와르 사태 등 아프리카 지역분쟁의 해결사 역할을 담당하는 등 아프리카 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3. 대한전선 남아프리카공화국 광케이블 입찰 성공사례

□ M-Tek(대한전선 남아공 법인) 개요

- M-Tek은 대한전선이 남아공 광케이블 입찰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2000년에 인수한 대한전선의 현지자회사임
- 현재 직원은 약 450명이고 연간 매출액은 약 1억달러인데, 주요 생산제품은 광케이블, 알루미늄, 컨덕터, 동선, 전력케이블 등임
- 현재 M-Tek은 남아공 전선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는데, 주요 제품별 시장점유율은 광케이블(60%), 알루미늄 컨덕터(70%), 동선(60%), 전력케이블(10%) 등임

□ M-Tek 마케팅 성공사례 : 한국기업 최초 정부입찰시장 진출

- M-Tek이 남아공에 진출하기 전까지 남아공 광케이블 입찰시장은 Aberdare사와 ATC사가 돌아가며 납품을 하는 사실상의 독점시장이었음
 - 이는 남아공의 UN경제재제 기간동안 해외에서 우수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국내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임
- M-Tek의 남아공 광케이블 입찰성공
 - M-Tek은 지난 2001년에 남아공 국영통신기업인 Telkom이 발주한 광케이블 공급입찰에 참가, 25만 Fiber Km를 2004년까지 3,500백만달러에 납품하기로 낙찰을 받음
 - 2004년도에는 그동안의 우수한 품질 및 납기기한 준수를 인정받아 공급계약을 3년간 연장하여 동 기간 중 100만 Fiber Km를 1억불에 공급하기로 함
- 입찰성공 의의 : 한국기업최초의 남아공 정부입찰시장 진출
 - 남아공은 흑인기업 가산점이라는 독특한 정부입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기업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 대한전선은 이러한 흑인기업 가산점을 십분활용, 현재 흑인기업(M-Tek)을 설립, 우리 기업 최초로 남아공 정부입찰 시장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양함

□ M-Tek 입찰성공 요인

- 제품차별화 : 선진제조공법(VAD공법) 도입
 - M-Tek은 기존 납품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제품 차별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선진제조공법으로 생산한 고품질 광케이블로 입찰참가

- 고품질 광케이블로 인해 입찰단가는 경쟁업체 대비 3#나 높았지만, 최신 공법도입에 따라 품질점수를 높게 받았고 제품 보증기간을 15년으로 제시함으로써 높은 기능점수 획득
- 흑인우대정책(BEE) 활용
 - 남아공 정부는 흑인경제 육성을 위해 입찰시에 흑인 기업들에게 가산점 부여
 - 대한전선은 이러한 남아공 정부입찰제도를 활용, M-Tek 인수과정에서부터 회사지분의 일부를 흑인에게 양도해 입찰 참여시 흑인기업 가산점 획득
- 신뢰확보
 - 입찰발주처인 Eskom은 M-T다dml 15년 장기 제품보증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대한전선 본사가 품질 및 납기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하여 신뢰를 확보함
 - 입찰낙찰 후 3년간에 걸친 공급기간동안 적기에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신뢰를 한층 더 확보하였고 이는 공급계약 연장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함
- 남아공 정부의 반 기득권 업체 정서 활용
 - 1994년 흑인정권 출범이후 남아공 정부 및 공기업은 인종차별 정책기간동안 기득권을 유지해온 기존 업체들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
 - M-Tek은 이러한 남아공 정부관료 및 공기업 경영진들의 정서를 간파, 적시에 입찰에참가함으로써 기존 기득권업체들을 제치고 입찰에 성공

[자료원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아프리카, 대외경제연구원]



VIII. 조세조약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VIII. 조세조약

[나이지리아] :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임

[남아프리카 공화국]

1995년 7월 7일 서울에서 서명
1996년 1월 7일 발효

제1조 【인적 적용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 (1) 소득세
 - (2) 법인세
 - (3) 농어촌개발특별세
-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남아공에 있어서는,

- (1) 보통세
 - (2) 비거주자 주주세
 - (3) 제2차기업세
- (이하 "남아공의 조세"라 한다)

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해야 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서

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에 대

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 나. "남아공"이라 함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남아공의 주권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남아공의 법과 국제법에 따라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영해 및 대륙붕을 포함하는 영해밖의 지역을 포함한다.
-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남아공을 말한다.
-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남아공의 조세를 말한다.
- 마. "인"이라 함은 개인·회사 및 조세목적상 실체로 인정되는 기타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회사 또는 실체를 말한다.
-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 (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조합 및 단체
- 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1)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 (2) 남아공의 경우, 국세청장 또는 그의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어느 시점에서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시점에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에 있어서는, 한국의 법에 의하여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다만, 이 용어는 한국내 원천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나. 남아공에 있어서는 남아공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개인과 남아공내에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둔 기타의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 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인은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관리장소
 - 나. 지점

- 다. 사무소
 - 라. 공장
 - 마. 작업장
 - 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또는 건설·설비공사는 12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이 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가.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 나. 기업 소유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재고 보유
 -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 보유
 -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 마.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 바. "가"호 내지 "마"호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다만, 동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이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에서 중개인·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 대리인이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지

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6조 【부동산 소득】

1. 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채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채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채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또는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광상·광천 및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 【사업이윤】

1. 일방채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채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채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채약국의 기업이 타방채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채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는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채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채약

-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 조 전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이윤
 - 나. 컨테이너의 사용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이윤 다만, 그러한 임대 또는 사용이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되며 이에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동 타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렇게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적인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으로 되었을 이윤인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이 당해 조정을 정

당하다고 간주하는 한, 동 타방채약국은 이들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채약국에서 부과된 조세를 적절히 조정한다. 이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필요시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배당】

1. 일방채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채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 배당총액의 5퍼센트
 - 나. 기타의 모든 경우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채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채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채약국에 소재하는 고정 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채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채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타방채약국은 동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채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채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채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 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 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불되는 이자 및 어느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3항 "가"호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과 남아공 중앙은행
 - 나. 양 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자치단체
 - 다. 자본 중 최소한 80퍼센트 이상이 어느 체약국 정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되는 기관으로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 것
5.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국채·공채와 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이 조의 목적상 지급연체로 인한 과태료는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도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를 불문하고, 이자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

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간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예술·학술작품(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를 불문하고 일방체약국안에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

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 【양도소득】

1. 제6조에 언급된 타방체약국 소재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없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 기업이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인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개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안에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보유한 적이 없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개인이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 당해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규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동 개인은 타방체약국안에 정규적으로

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동 타방채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킨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가·치과의사 또는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독립적인 학술·문화·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 등을 포함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제18조·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에 관련하여 일방채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채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이 타방채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동 타방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채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채약국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월 기간중 총 183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채약국에 체재하고,
 - 나. 그 보수가 타방채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 다. 그 보수가 타방채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채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일방채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채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채약국의 거

- 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예능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제시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의 방문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각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금에 의해 지원되거나 또는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특별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제18조 【연금 및 보험연금】

1.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기타 유사한 보수 및 보험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적정하고 완전한 대가에 상응하는 지급의무에 따라 일생동안, 특정한 또는 확정가능한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일정한 횟수에 걸쳐 지급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19조 【정부용역】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이들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이외의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1) 동 체약국의 국민인 자,
 -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하부조직 또는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이들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체

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임금·기타 유사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남아공중앙은행과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 교환되는 서한으로 지정·합의될 수 있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기관이 지급하는 급료·임금·기타 유사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0조 【학생·견습생 및 사업훈련생】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며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그렇게 체재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학생·견습생 및 사업훈련생이 그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상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로부터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제21조 【교수 및 연구자】

1. 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일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해 비영리기관으로 승인된 유사한 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수행만을 위하여 동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며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그러한 방문을 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이 동 일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그러한 연구가 공적 이익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 동 연구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기타소득】

1. 이 협약의 전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그러한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

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이 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 가. 한국의 경우,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남아공내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남아공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남아공의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되는 조세는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세액공제는 남아공내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한국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남아공의 경우,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 남아공의 거주자가 납부하는 한국의 조세는 남아공의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으로부터 공제된다. 그러나 그러한 공제는 납부할 총 남아공조세에서 당해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24조 【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3. 일방체약국 기업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제9조 제1항·제11조 제8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한다.
5.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시민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 어떠한 인적공제·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6. 이 조에서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대상조세를 말한다.

제25조 【상호합의절차】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인이 여기는 경우,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동 문제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스스로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합의된 사항은 체약국의 국내법상 어떠한 시한에도 관계없이 시행된다.
4.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 의

견교환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제26조 【정보교환】

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이와 관련된 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쟁송청구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만 정보를 사용한다. 이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할 경우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7조 【외교관 및 영사관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따른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저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 【발효】

1.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에게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하여 자국 법률상 필요한 절차의 완료를 통보한다. 이 협약은 두번째 통보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째 또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제29조 【종료】

1.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체약국은 이 협약이 발효된 연도이후 5년째 되는 어느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2.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효력이 중지된다.
 -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 나.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5년 7월 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본 책자는 우리 기업들이 아프리카로 진출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아프리카의 조세법 및 관련 법령을 2008.1.1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 적용 등은 반드시 아프리카 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 조문을 확인한 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책자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더욱 좋은 자료를 만드는데 활용하겠습니다.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번호 : (02)397-1423~1424
팩스번호 : (02)723-9976

원고작성 및 편집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송 성 권
	행정사무관	이 선 주
	세무조사관	김 헌 국

서울청 역삼세무서 세무조사관 유 용 호(3011-8461)

인쇄처 : (주)아트팰리스 T.(02)2277-1088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397-1423)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